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112차 의회

제1차 회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함.

미합중국 상원에서,

_____ (요청에 따라) 다음의 법안을 소개함.

이 법안은 _____에 관한 위원회에서 두 번 검토되고 언급되었음.

법안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함.

미합중국 상원과 하원에서 입법하도록 함.

제1조. 법령명의 약칭.

(a) 법령명의 약칭 - 본 법률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이라 칭할 수 있다.

(b) 목차 - 본 법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법령명의 약칭.

제2조. 목적.

제3조. 정의.

제I편 - 협정의 승인 및 협정과 관련한 일반 규정

제101조. 협정의 승인 및 시행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제103조. 시행을 예상한 이행조치 및 최초의 규정(規程)

제104조. 공포된 조치에 대한 협의와 숙려(layover)규정 및 공포된 조치의 시행일.

제105조. 분쟁해결 절차의 운용.

제106조. 청구에 대한 중재.

제107조. 시행일 및 종료의 효과.

제II편-관세 규정

제201조. 관세 수정.

제202조. 원산지 규정.

제203조. 통관 사용자 수수료.

제204조. 부정확한 정보의 공개, 원산지 허위 증명, 특혜관세대우의 부인.

제205조. 수입통관의 재정산.

제206조. 기록유지 요건.

제207조. 섬유 및 의류 상품의 무역과 관련한 집행.

제208조. 규정의 제정.

제III편-수입에 대한 구제

제301조. 정의.

A부-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수입에 대한 구제

제311조. 구제조치를 위한 행위 개시.

제312조. 신청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치.

제313조. 구제조치의 시행.

제314조. 구제권한의 종료.

제315조. 보상 권한.

제316조. 비밀영업정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미국]

B부-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21조. 자동차긴급수입제한조치.

C부-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31조. 구제조치를 위한 행위 개시.

제332조. 결정 및 구제조치의 시행.

제333조. 구제조치의 기간.

제334조. 구제조치로부터 면제되는 물품.

제335조. 수입관련 구제조치 종료 이후의 관세율.

제336조. 구제권한의 종료.

제337조. 보상권한.

제338조. 비밀영업정보.

D부-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에 따른 케이스

제341조. 대한민국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제IV편-조 달

제401조. 적격제품.

제V편-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01조. 약 칭.

A부-무역 구조조정 지원 연장

제I장-무역 구조조정 지원 관련 규정의 적용

제511조. 무역 구조조정 지원 관련 규정의 적용

제II장-근로자들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21조. 그룹 적격성 요건.

제522조. 교육 면제대상의 축소.

제523조. 무역재정비 수당에 대한 제한.

제524조. 교육, 고용 및 사안별 관리 서비스, 그리고 취업준비 및 재배치 수당을 위한 자금조달.

제525조. 재고용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26조.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제527조. 연장.

제III장- 그 밖의 구조조정 지원

제531조. 기업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32조. 사회를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33조. 농부들에 대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IV장-일반규정

제541조. 무역 구조조정 지원 규정의 적용 가능성.

제542조. 종료 규정.

제543조. 일몰조항.

B부-보건범위의 개선

제551조. 보건의료 관련 세금공제.

제552조. 공제가능 기간에 있어서 63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TAA 사전확인 기간.

제553조. 특정 TAA-적격개인 및 PBGC 수취인을 위한 COBRA 혜택의 연장.

C부-대응구매

제I장-실업 보상 프로그램 통합

제561조. 기망적 청구에 대한 강제적 벌금의 부과.

제562조. 고용자의 잘못에 대한 부담 면책의 금지.

제563조. 재고용된 피고용자들에 관한 신규 고용 명부 보고.

제II장-추가 대응구매

제571조. 고성능 이미지 서비스(ADVANCED IMAGING SERVICES)에 대한 장비 활용율의 조정.

제572조. 수입소득세 공제 실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유급 준비자에 대한 벌금의 인상.

제573조. 조세행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교도소에 대한 요건.

제VI편-대응구매

제601조. 상거래 처리 수수료.

제602조. 통관 사용자 수수료의 연장.

제2조.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2002년의 초당적 무역촉진허가법(19 U.S.C. 3803(b))에 따라 타결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승인 및 이행;
- (2)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2011. 2. 10.자 서신교환에 따라 타결된 협정의 혜택 확보;
- (3) 서로의 혜택을 위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경제적 관계 강화 및 발전
- (4)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무역과 투자를 위한 장벽 감축 및 철폐를 통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의 확립; 그리고
- (5)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의 구축.

제3조. 정의.

본 법률에서:

- (1) 협정. - "협정"이라 함은, 제101(a)(1)조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미합중국

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 (2) 무역위원회. - "무역 위원회"라 함은 미합중국의 국제무역위원회를 말한다.
- (3) HTS. - "HTS"라 함은, 미국의 관세양허표를 말한다.
- (4) South Korea. - "South Korea"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 (5) 섬유 및 의류 상품. - "섬유 및 의류 상품"이라 함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협정법 제101(d)(4)조에 언급된 섬유 및 의복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있는 상품들을 말한다.

제I편 - 협정의 승인 및 협정과 관련한 일반 규정

제101조. 협정의 승인 및 시행

- (a) 협정의 승인 및 행정처분의 내용. - 2002년의 초당적 무역촉진허가법 제2105조(19 U.S.C. 3805) 및 1974년의 무역법 제151조(19 U.S.C. 2191)에 따라, 의회는 다음 각호를 승인한다-
 - (1) 대한민국 정부와 2007년 6월 30일에 타결되었고 [2011년 __월 __일] 의회에 제출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 (2) 협정 이행을 위해 [2011년 __월 __일]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의 제안내용.
- (b) 협정 시행을 위한 조건. -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협정 발효일에 시행되는 협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 대통령은 협정이 2012. 1. 1. 이후로 미합중국에 관하여 시행된다는 점을 규정한 서면(Note)을 대한민국 정부와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 (a)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
 -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한다.

(2) 해석. - 본 법률의 어느 규정이든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을 개정 또는 수정시키는 해석, 또는

(B)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의거하여 부여된 여하한 권한을 제한하는 해석. 단, 본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b)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법적인 이의신청. -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주(州)법의 정의. - 본 항에서 "주(州)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어느 국가의 정치적 소속기관의 여하한 법령; 그리고

(B) 보험업을 규율하고 과세하는 여하한 주(州)법.

(c) 사적(私的) 구제수단에 관한 협정의 효력. - 미합중국 이외의 어떠한 자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협정에 의해서나 또는 이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소인(訴因)이나 항변권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또는

(2) 법령의 여하한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미합중국이나 여하한 주 또는 어느 주의 여하한 정치적 소속기관(political subdivision)의 부서, 기관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instrumentality)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3조. 시행을 예상한 이행조치 및 최초의 규정(規程)

(a) 이행조치. -

(1) 공포권한. - 본 법률의 입법일 후-

(A) 대통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공포할 수 있으며, 그리고

(B) 그 밖에 미합중국 정부의 다른 공무원들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즉, 협정 발효일에 시행하는 본 법률의 여하한 규정 또는 본 법률에 의한 개정사항이 그 날에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포하거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되, 그러한 공포나 규정은 협정 발효일 전의 날을 시행일로 할 수 없다.

(2) 공포된 특정 조치의 시행일. - 대통령이 본 법률의 권한임에 따라 공포한 여하한 조치로서 제104조에 따른 협의 및 숙려(layover)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치는 그 공포문이 연방관보에 공표되는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3) 15일의 제한에 대한 면제. - 공포된 조치의 시행에 관한 제(2)호에 있는 15일의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협정 발효일에 본 조에 따라 공포된 여하한 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면제된다.

(b) 최초의 규정들. - 본 법률상 요구되거나 승인된 조치 또는 협정 이행을 위해 제 101(a)(2)조에 따라 제출된 행정처분 내역서에서 제안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최초의 규정들은,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이행조치가 협정 발효일 후에 시행되는 경우, 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들은,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제104조. 공포된 조치에 대한 협의와 숙려(layover)규정 및 공포된 조치의 시행일.

본 법률의 어느 규정에서, 공포에 의한 대통령의 조치 이행에 대하여 본 조의 협의 및 숙려 요건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포될 수 있다.

(1) 계획된 조치에 관하여 대통령이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득하였을 것-

(A) 1974년의 무역법 제135조(19 U.S.C. 2155)에 따라 설치된 해당 자문위원회들; 그리고

(B) 무역위원회;

(2) 대통령이 상원의 재정위원회와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

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 (A) 공포하고자 계획하는 조치 및 그 이유; 그리고
- (B) 제(1)호에 따라 득(得)한 자문;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첫 날에 시작하여 60일(曆日)(calendar day)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그리고
- (4) 대통령이 계획된 조치에 대하여 제(3)호에 언급된 기간 중에 제(2)호에 언급된 위원회들과 협의하였을 것.

제105조. 분쟁해결 절차의 운용.

- (a) 사무소의 설치 또는 지정. - 대통령은, 협정 제22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할 부서를 상무부 내에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동 담당부서를 미국법령집 제V편의 섹션 552에서 말하는 기관(agency)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b) 세출의 승인. - 제(a)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부서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협정 제22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들의 경비 중 미합중국 부담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1 회계연도 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최고 \$750,000를 상무부에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제106조. 청구에 대한 중재.

미합중국은, 협정 제11.16.1(a)(i)(C)조 또는 제11.16.1(b)(i)(C)조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되는 여하한 청구를, 협정 제11장의 제B절에 규정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07조. 시행일 및 종료의 효과.

- (a) 시행일. - 제(b)항 및 제V편과 제VI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률 및 본 법률에 따른 개정사항은 협정의 발효일에 시행한다.
- (b) 예외. -

- (1) 원칙. - 제1조 내지 제3조와 제207(g)조 및 본 편은 본 법률의 입법일에 시행한다.
- (2) 소정의 변경규정. - 본 법률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및 제401조에 의한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에 시행하며, 협정 발효일에 대한민국에 관하여 적용된다.
- (c) 협정의 종료. - 협정이 종료하는 날에, 본 법률(본 항 및 제V편은 제외) 및 본 법률에 의한 개정사항(제V편 및 제VI편에 의한 개정사항 제외)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II편-관세 규정

제201조. 관세 수정.

- (a) 협정에 규정된 관세 수정. - 대통령은, 협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그리고 부속서2-나, 부속서4-나 및 부속서22-가를 시행 또는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를 공포할 수 있다.
 - (1) 여하한 관세의 수정 또는 존치,
 - (2) 면세의 존치 또는 소비세 대우, 또는
 - (3) 추가 관세
- (b) 그 밖의 관세 수정. - 제104조의 협의 및 숙려(layover) 규정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은 협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호혜적이고도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양허의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를 공포할 수 있다-
 - (1) 여하한 관세의 수정 또는 존치,
 - (2) 협정의 부속서2-나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대우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른 수정,

- (3) 면세의 존치 또는 소비세 대우, 또는
- (4) 추가 관세,
- (c) 증가율로의 전환. - 제(a)항 및 제(b)항에서, 협정 부속서2-B에 있는 미합중국 양허표에 기준세율이 명시되어있거나 또는 중복관세율에 해당하는 여하한 상품에 관하여, 대통령은 그 기준세율을 그 기준세율에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증가율로 대체할 수 있다.
- (d) 자동차에 대한 관세대우. -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다음과 같은 자동차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대우를 공포할 수 있다:
 - (1) 특정 승용 자동차. - 입고되거나 소비용으로 출고되는 것으로서, HTS의 소호 8703.10.10, 8703.10.50, 8703.21.00, 8703.22.00, 8703.23.00, 8703.24.00, 8703.31.00, 8703.32.00 또는 8703.33.00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의 경우-
 - (A)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협정 1년차 기간 내지 협정 4년차 기간까지는 2.5퍼센트로 한다; 그리고
 - (B) 그 이후로는 위 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무관세로 한다.
 - (2) 전기자동차. - 입고되거나 소비용으로 출고되는 것으로서, HTS의 소호 8703.90.00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의 경우-
 - (A) 위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i) 협정 1년차 기간 동안은 2.0퍼센트;
 - (ii) 협정 2년차 기간 동안은 1.5퍼센트;
 - (iii) 협정 3년차 기간 동안은 1.0퍼센트; 그리고
 - (iv) 협정 4년차 기간 동안은 0.5퍼센트; 그리고
 - (B) 그 이후로는 위 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무관세로 한다.
 - (3) 소정의 트럭. - 입고되거나 소비용으로 출고되는 것으로서, HTS의 소호 8704.21.00, 8704.22.50, 8704.23.00, 8704.31.00, 8704.32.00 또는 8704.90.00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의 경우-
 - (A) 위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i) 협정 1년차 내지 협정 7년차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5퍼센트;
 - (ii) 협정 8년차 기간 동안에는 16.7퍼센트; 그리고

- (iii) 협정 9년차 기간 동안에는 8.4퍼센트; 그리고
- (B) 그 이후로는 위 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무관세로 한다.
- (4) 정의. - 본 항에서-
 - (A) "협정 1년차 기간"이라 함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달력상의 연도 기준) 그 연도의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 (B) "협정 2년차 기간,"과 "협정 3년차 기간," "협정 4년차 기간," "협정 5년차 기간," "협정 6년차 기간," "협정 7년차 기간," "협정 8년차 기간," 그리고 "협정 9년차 기간"이라 함은, 협정이 시행 중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의 연도 각각을 말한다.

제202조. 원산지 규정.

- (a) 적용 및 해석. - 본 제9조에서:
 - (1) 세번. - 여하한 세번의 기준은 HTS이다.
 - (2) HTS의 언급. - 본 조에서 류, 호 또는 소호를 일컫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HTS의 류(chapter),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를 일컫는 것으로 한다.
 - (3) 비용 또는 가액. - 본 조에 언급된 비용 및 가액은 해당 상품이 제작되는 국가의(대한민국이든 미합중국이든 불문함)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비치되어야 한다.
- (b) 원산지상품. - 본 법률의 목적상, 그리고 협정에 규정된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본 조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느 상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한다.
 - (1) 위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전부를 득하였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인 경우;
 - (2) 그 상품이, 즉 -
 - (A)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그리고-

- (i)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각각이 협정의 부속서4-가 또는 부속서6-가에 명시된 세 번 변경을 거친 경우; 또는
- (ii) 그 상품이 달리 협정의 부속서4-가 또는 부속서6-가에 명시된 여하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 포함비율 또는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리고
- (B) 그 상품이 본 조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 (3)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재료를 통해서만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 (c) 역내가치 포함비율. -

(1) 원칙. - 제(b)(2)항의 목적상, 협정의 부속서6-가에 언급된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은, 제(4)호가 적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호에 기재된 공제법이나 제(3)호에 기재된 집적법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공제법. -

(A) 원칙. -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은 공제법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VC = AV - VNM / AV \times 100$$

(B) 정의. - 제(A)목에서:

(i) RVC. -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그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말한다.

(ii) AV. - "AV"는 그 상품의 조정가치를 말한다.

(iii) VNM. - "VNM"이라 함은,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집적법. -

(A) 원칙. - 어느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은 다음과 같은 집적법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RVC = VOM / AV \times 100$$

(B) 정의. - 제(A)목에서:

- (i) RVC. -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그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말한다.
 - (ii) AV. - "AV"는 그 상품의 조정가치를 말한다.
 - (iii) VOM. - "VOM"은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 (4) 특정 자동차 상품에 대한 특례규정. -
- (A) 원칙. - 제(b)(2)항의 목적상, 협정의 부속서6-A에 언급된 자동차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은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호에 기재된 공제법이나, 제(3)호에 기재된 집적법 또는 다음의 순원가법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RVC = NC - VNM / NC \times 100$$

- (B) 정의. - 제(A)목에서:

- (i) 자동차 상품. - "자동차 상품"이라 함은, 소호 8407.31 내지 8407.34, 소호 8408.20, 호8409, 또는 호 8701 내지 8708 에 규정된 상품을 말한다.
- (ii) RVC. - 백분율로 표시된 자동차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말한다.
- (iii) NC. - "NC"라 함은, 자동차 상품의 순원가를 말한다.
- (iv) VNM. -"VNM"이라 함은, 생산자가 획득하여 자동차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C) 자동차. -

- (i) 산정의 기준. - 호 8701 내지 8705에 규정된 자동차인 자동차 상품에 대한 제(A)목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제(A)목에 있는 순원가 공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평균할 수 있다-
 - (I) 제(ii)단에 기재된 범주들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또는
 - (I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모든 자동차.
- (ii) 범주. -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항에

기재된 범주에 속한다-

- (I)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하는 제(i)단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자동차류에 있는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 (II)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하는 제(i)단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자동차류의 자동차; 또는
 - (III)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하는 제(i)단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영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 (D) 그 밖의 자동차 상품. -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호 8407.31 내지 8407.34에 규정되어있거나, 또는 호 8409, 8706, 8707 또는 8708에 규정된 자동차 재료에 대한 제(A)목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 (i) 다음의 기간에 걸쳐 제(A)목에 있는 순원가 공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할 수 있다-
 - (I) 자동차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 (II) 여하한 분기 또는 월, 또는
 - (III) 위 상품 생산자의 회계연도,
- 단, 그 상품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계연도, 분기 또는 월에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ii)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위하여 제(i)단에서 말하는 평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는
 - (iii)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위 상품을 위하여 제(i)단 또는 제(ii)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 순원가의 산정. - 자동차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규정된 비용할당과 관련된 규정에 합치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제(B)목에 따른 자동차 상품의 순원가를 정하여야 한다-
- (i) 자동차 상품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

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자동차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방식;

- (ii) 위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자동차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자동차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또는
- (iii) 자동차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

(d) 재료의 가치. -

(1) 원칙. - 제(c)항에 따라 물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제(f)항에 따라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료의 가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A)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의 조정가치;
- (B)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한 재료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 제101(d)(8)조(19 U.S.C. 3511(d)(8))에 언급된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15조와 그에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 즉 생산자에 의한 수입이 없을 때에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정하는 내용으로 재무장관이 공포하는 규정들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결정되는 가치; 또는
- (C)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다음 각 단 금액의 합계액-
 - (i)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 (ii)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2) 재료의 가치에 대한 추가 조정-

- (A) 원산지 재료.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다음의 경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비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

다;

- (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 내에서 또는 그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에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및 포장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 (ii)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 (iii)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B) 미원산지 재료. - 다음의 경비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미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는 경우, 그 경비는 미원산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 (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 내에서 또는 두 국가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에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ii)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 (iii)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 (iv)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미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

(e) 누적. -

- (1) 다른 국가의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재료. - 서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원산지 재료가 다른 국가 영역에서의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재료는 그 다른 국가 영역을 원산지로 본다.
- (2) 복수의 생산자. -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하

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은, 그 상품이 제(b)항의 요건과 본 조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된다.

(f) 비원산지 재료의 최소허용 금액. -

(1) 원칙. -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의 부속서6-가 에 따른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된다-

- (A)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세 번 변경이(협정의 부속서 6-가에 규정된)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B) 그 상품이 본 조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 (C) 위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 포함비 율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될 것.

(2) 예외. - 제(1)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제3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3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B) 제4류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소호 1901.90이나 2106.90에 규정된 비원산지 낙농 조제품 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것.
- (C) 제4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또는 소호 1901.90에 규정된 비원산지 낙 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넘게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 (i) 소호 1901.10에 규정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유아 조제품.
 - (ii) 소호 1901.20에 규정된 혼합물 및 가루반죽으로서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서, 버터지를 중량으로 25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것.
 - (iii) 소호 1901.90 또는 2106.90에 규정된 낙농 조제품으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것.
 - (iv) 호 2105에 규정된 상품.
 - (v) 소호 2202.90에 규정된 우유 포함 음료.
 - (vi) 소호 2309.90에 규정된 동물사료로서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것.

- (D) 소호 0703.10, 0703.20, 0709.59, 0709.60, 0711.90, 0712.20, 0714.20 또는 소호 0710.21 내지 0710.80 또는 0712.39 내지 0713.10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7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E) 호 1006, 1102, 1103, 1104 또는 소호 1901.20 또는 1901.90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1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쌀 제품 또는 호 1006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F) 소호 2009.11 내지 2009.39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 또는 소호 2106.90 또는 2202.90에 규정된 농축 또는 비농축된 것으로서 미네랄 또는 비타민으로 강화된 단일의 과일이나 야채의 과일 주스 또는 야채 주스에 사용되며 호 0805 또는 소호 2009.11 내지 2009.39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G) 호 2008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제8류 또는 제20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복숭아, 배 또는 살구.
 - (H) 호 1501 내지 1508, 또는 호 1512, 1514 또는 1515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5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I) 호 1701 내지 1703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호 1701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J) 소호 1806.10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서 제17류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
 - (K) 제(A)목 내지 제(J)목 그리고 협정의 부속서6-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 (3) 섬유 또는 의류 상품. -
- (A) 원칙. - 제(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나 의류상품이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소정의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협정의 부속서4-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 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B) 특정 섬유 또는 의류 상품.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동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동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C) 원사, 원단 또는 섬유원료. - 본 호에서, 원사, 원단 또는 섬유원료인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라 함은, 그 상품에 있는 섬유원료 전부를 말한다.

(g)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

(1) 원칙. -

(A)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청구. - 대체가능 상품이나 대체가능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청구하는 자는 대체가능 상품이나 대체가능 재료의 물리적인 분리에 근거하여서나 또는 대체가능 상품이나 대체가능 재료에 관한 재고 관리기법을 사용하여 그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B) 재고관리기법. - 본 항에서 "재고관리기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i) 평균법;

(ii) "후입선출법";

(iii) "선입선출법"; 또는

(iv) 그 밖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법-

(I)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가(대한민국이든 미합중국이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법; 또는

(II) 위 국가에서 달리 인정하는 기법.

(2) 재고기법의 선택. - 어느 특정 대체가능 상품이나 대체가능 재료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자는 자신의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그 대체가능 상품이나 대체가능 재료에 대하여 그 기법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h)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

(1) 원칙. - 제(2)호 및 제(3)호를 전제로 하여,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 때에는-

- (A)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는 위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원산지 상품으로 대우한다; 그리고
- (B)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협정의 부속서6-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 번 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2) 조건. - 제(1)호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A)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3) 역내가치 포함비율. - 상품이 역내가치 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 산정에 있어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해당되는 바에 따름) 고려된다.
- (i)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 상품을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의 부속서4-가 또는 부속서6-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상품이 역내가치 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위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 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해당되는 바에 따름) 고려된다.
- (j) 수송용 포장 재료 및 용기. -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k) 간접재료. - 간접재료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l) 통과 및 환적. - 제(b)항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생산을 거친 상품이, 그 생산 이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1)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여하한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그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이외의 국가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m) 세트에 들어가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품. - 협정의 부속서4-가 및 부속서6-가에 규정(規定)된 규정(規程)에도 불구하고, HTS의 일반해석규칙3에 규정된 바대로 소매용 세트에 들어가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또는

(2) 그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

(A) 섬유나 의류 상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 조정가격의 10퍼센트; 또는

(B) 섬유나 의류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세트 조정가격의 15퍼센트.

(n) 정의. - 본 조에서:

(1) 조정가격. - "조정가격"이라 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 제101(d)(8)조 (19 U.S.C. 3511(d)(8))조에 언급된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15조와 그에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로서,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2) 자동차류. - "자동차류"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 범주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A) 소호 8701.20, 8704.10, 8704.22, 8704.23, 8704.32 또는 8704.90, 또는 호 8705나 8706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소호 8702.10이나 8702.90에 규정된 16인승 이상의 수송차량.

(B) 소호 8701.10 또는 소호 8701.30 내지 8701.90에 규정된 자동차.

(C) 소호 8702.10 또는 8702.90에 규정된 15인승 이하의 수송차량, 또는 소호 8704.21이나 8704.31에 규정된 자동차.

(D) 소호 8703.21 내지 8703.90에 규정된 자동차.

(3)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 -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이나 재료와 상업적 목적상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해당되는 바에 따름) 말한다.

(4)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

(A)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영역(해당되는 바에 따름)에서 인정된 컨세서스 또는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지지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 세무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5) 전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전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의 여하한 것을 말한다:

(A)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 생산품.

(B)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C)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획득한 상품.

(D)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밋사냥, 어로 또는 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E)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제(A)목 내지 제(D)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F) 다음과 같은 선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

(i) 대한민국에 등기 또는 등록되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 (ii) 미합중국의 법령에 따라 서류가 작성된 선박.
- (G) 제(F)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가공 선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 (i) 대한민국에 등기되거나 등록되어있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것; 또는
 - (ii) 미합중국의 법령에 따라 서류가 작성될 것.
- (H) (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인(人)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대한민국이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또는,
 - (i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 밖에서 미합중국이나 미합중국의 인(人)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미합중국이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I) 우주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J)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 (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장; 또는
 - (i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K)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중고 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 (L) 모든 생산단계에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로부터만 생산된 상품 -
 - (i) 제(A)목 내지 제(J)목에 규정된 상품; 또는
 - (ii) 제(i)단에 규정된 상품의 파생품.
- (6) 동일상품. - "동일상품"이라 함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 (7) 간접재료. - "간접재료"라 함은,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

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 (A) 연료 및 에너지;
 - (B) 도구, 형판 및 주형;
 - (C)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D)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E)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F)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G)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 (H)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지만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 (8) 재료. - "재료"라 함은, 부품이나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 (9) 자가생산된 재료. -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 (10) 자동차의 모델라인. - "자동차의 모델라인"이라 함은, 같은 차대나 모델명을 가진 일군(一群)의 자동차를 말한다.
- (11) 순원가. - "순원가"라 함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 (12) 비허용 이자비용. - "비허용 이자비용"이라 함은,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비슷한 만기물에 적용 가능한 공식 이자율보다 700 베이스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 (13)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본 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 (14)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라 함은, 운송기간 동안 다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다른 상품을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15) 특혜관세대우. -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관세율 및 협정 제2.10.4조에 따른 대우를 말한다.

(16) 생산자. - "생산자"라 함은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17) 생산. -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18) 합리적 할당. - "합리적 할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상품. - "재생상품"이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

(A) 중고 상품을 개별부품으로 해체; 그리고

(B) 그 개별부품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 검사, 테스트 또는 그 밖의 공정.

(20) 재제조 상품. - "재제조 상품"이라 함은, 제84류, 제85류, 제87류나 제90류 또는 호 9402로 분류되는 상품 중 -

(A)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상품으로 구성, 그리고

(B)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며,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21) 총비용. -

(A) 원칙. - "총비용"이라 함은-

(i)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 또는 두 국가 모두의 영역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ii) 여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자에 의하여 취득된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해 납부된 세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B) 다른 정의. - 본 호에서:

(i) 제품비용. - "제품비용"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며, 재료의 가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ii) 기간비용. - "기간비용"이라 함은, 제품 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경비와 일반 및 관리 경비처럼, 그 발생 기간 중에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iii)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이라 함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

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비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을 말한다.

(22) 사용된. -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활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o) 대통령의 공포권한. -

(1) 원칙. - 대통령은 다음을 HTS의 일부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A) 협정의 부속서4-가 및 부속서6-가에 있는 규정; 그리고

(B) 본 편을 협정에 부합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 범주.

(2) 수정. -

(A) 원칙. - 제104조의 협의 및 숙려규정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은, 제50류 내지 제63류의 규정을 제외하고는(협정의 부속서4-가에 포함되어있는 바와 같음), 제(1)(A)호의 권한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대한 수정사항을 공포할 수 있다.

(B) 추가적인 공포. - 제(A)목에도 불구하고, 제104조의 협의 및 숙려규정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은 다음을 공포할 수 있다 -

(i) 협정 제4.2.5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바에 따른, 제(1)(A)호의 권한에 의해 공포된 규정에 대한 수정사항; 그리고

(ii) 협정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이 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제50류 내지 제63류의 규정에(협정의 부속서4-가에 포함되어있는 바와 같음) 관한 오타, 오기 또는 그밖에 중요하지 아니한 기술적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수정사항.

(3) 3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

(A) 원칙. - 제(2)(A)호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부속서4-B-1에 있는 미합중국 목록에 기재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의 목록은 본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B) 정의. - 본 호에서:

(i)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 -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구매자,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공급자를 말한다.

- (ii) 일(DAY, DAYS). - "일"(day 및 days)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미합중국 정부가 준수하는 법정 공휴일은 제외된다-

(C)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의 추가 요청. -

- (i) 원칙. -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는,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미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또한 그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협정의 부속서4-나-1에 있는 미합중국 목록에 추가하여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i) 결정. - 대통령은, 제(i)단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I) 그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미합중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 또는

- (II) 여하한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위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

- (iii) 공포 권한. - 대통령은 제(iv)단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요청의 대상이 되는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협정의 부속서4-나-1에 있는 미합중국 목록에 추가한다고 공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제(ii)단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

- (I) 그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미합중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점; 또는

- (II)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도 위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 (iv) 기간. - 대통령이 제(iii)단에 의거하여 공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I) 제(i)단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 (II) 대통령이 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ii)단의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와 같은 요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 (v) 시행일. - 제103(a)(2)조에도 불구하고, 제(iii)단에 따라 이루어진 공포는 공포문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날에 시행된다.

- (D) 요청에 대한 간주거부. -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제(C) (i)목에 따른 요청을 한 이후, 대통령이 제(C) (iv)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대하여 제(C) (ii)목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본다.
- (E)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의 삭제 요청. -
- (i) 원칙. -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는, 협정의 부속서4-나-1에 있는 미합중국 목록에서 제(C) (iii)목에 따라 그 목록에 추가되었던 여하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삭제하여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i) 공포권한. - 제(i)단의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협정의 부속서4-나-1에 있는 미합중국 목록에서 삭제된다는 점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그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미합중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 (iii) 시행일. - 제(ii)단에 따른 공포는 그 공포문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이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 (F) 절차. -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 (i) 제(C)목 및 제(E)목에 따른 요청서의 제출을 규율하는 절차; 그리고
- (ii) 대통령이 제(C) (ii)목 또는 제(E) (ii)목에 따른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실체가 의견 및 근거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규정하는 절차.

제203조. 통관 사용자 수수료.

1985년의 통합윙니버스예산조정법의 제13031(b)조(19 U.S.C. 58c(b))에서 다음의 내용을 제(18)호 다음에 추가하여 개정한다.

"(19)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제202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상품에 관하여는 제(a) (10)항 또는 제(a) (10)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 호로 인해 위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관 사용자 수수료 계정에 있는 금전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제204조. 부정확한 정보의 공개, 원산지 허위 증명, 특혜관세대우의 부인.

(a) 부정확한 정보의 공개. - 1930년의 관세법 제592조(19 U.S.C. 159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c)항에서-

(A) 제(11)호를 제(12)호로 재지정; 그리고

(B) 다음의 신설 조항을 제(10)호 다음에 삽입한다:

"(11)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청구에 관한 사전 공개. - 어느 수입자가, 재무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도 자발적으로 어떤 상품에 관하여 정정된 신고를 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수입자는 그 상품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제202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부정확한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제(a)항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다음의 신설 조항을 끝 부분에 추가한다:

"(j)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허위증명. -

"(1) 원칙. - 제(2)호를 전제로 하여, 여하한 자가 기망(欺罔)이나, 중과실 또는 과실에 의해, 미합중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자유무역협정 제20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KFTA 원산지 증명(본 법률 제508조에 정의된 바에 따름) 허위로 확인해주는 것은 위법하다. 제(a)항의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 조의 절차 및 벌칙은 본 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부정확한 정보의 신속하고도 자발적인 공개. -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증명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다거나 동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안 직후에, 그 수출자나 생산자가 위 증명서를 발급 받은 모든 자에게 위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서면통지를 한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벌칙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

"(3)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 해당 정보가 KFTA 원산지 증명서에 규정되었을 당시에는 그 정보가 정확하였으나 나중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된 경우; 그리고
"(B) 그 자가 자신이 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모든 자들에게 사정의 변경에 대해 신속하고도 자발적으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b) 특혜관세대우의 부인. - 1930년의 관세법 제514조(19 U.S.C. 1514)에서, 끝 부분에 다음의 신설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한다:

"(j)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부인. - 미국 국토안보부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국이나 이민관세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제 20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 진술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징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후에 하는 진술이 적용되는 동일한 상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중단시키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국이 그 자의 진술이 위 제202조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는 때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

제205조. 수입통관의 재정산.

1930년의 관세법 제520(d)조(19 U.S.C. 1520(d))에서 제(1)호 앞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or"를 삭제한다; 그리고
- (2) "for which"를 삭제하고 , "or section 202 of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for which"를 삽입한다.

제206조. 기록유지 요건.

1930년의 관세법 제508조(19 U.S.C. 150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i) 항을 제(j) 항으로 재지정한다;

(2) 제(h)항 뒤에 다음의 신설 조항을 삽입한다:

"(i)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

"(1) 정의. - 본 항에서:

"(A) 기록 및 근거서류. - '기록 및 근거서류'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수출된 상품에 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그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ii)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그리고

"(iii) 그 상품이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B) KFTA 원산지 증명. - 'KFTA 원산지 증명'이라 함은, 어떤 상품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위 협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입증되는 증명을 말한다.

"(2)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K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는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근거서류를(증명서 및 그 사본을 포함) 작성 및 유지하고, 또한 재무부장관이 공포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심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관기간. -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그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기록 및 근거서류를, 그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3) 위와 같이 재지정된 제(j)항에서는, "(g), or(h)"를 삭제하고 "(g), (h), or(i)"를 삽입한다.

제207조. 섬유 및 의류 상품의 무역과 관련한 집행.

(a) 검증 중의 조치. -

(1) 원칙. - 재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2)호에 따른 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협정 제4.3조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은 동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검증이 수행되는 동안 제(b)항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결정. - 본 호에 따른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관의 결정이다 -

(A) 대한민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관세 법령, 규정, 절차, 요건 및 관행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는

(B) 위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나 의류 상품이 다음과 같다는 청구사항이 정확하다는 점 -

(i) 제202조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는

(ii) 대한민국의 상품이라는 것,

(b) 규정된 적절한 조치. - 제(a)(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검증요청이 해당 상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경우에는, 제(a)(2)(A)항에 규정된 준법에 관하여 제(a)(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수입 절차진행(liquidation)의 정지; 그리고

(2) 제(a)(2)(B)항에 규정된 청구에 관하여 제(a)(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가 제기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수입 절차진행의 정지.

(c) 정보가 부족한 경우의 조치. - 재무장관이 보기에, 제(a)(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한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12월 이내에 획득한 정보가 제(a)(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장관으로 하여금 동 장관이 제(a)(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그 보다 이른 날까지 제(d)항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 규정된 적절한 조치. - 제(c)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다음에 관한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의 부인 -

(A) 제(a)(2)(A)항에 규정된 준법에 관하여 제(a)(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 되는 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섬유나 의류 상품; 또는
- (B) 제(a)(2)(A)항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제(a)(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가 제기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 그리고
- (2) 다음과 같은 상품의 미합중국에 대한 수입 거부—
- (A) 제(a)(2)(A)항에 규정된 준법에 관하여 제(a)(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 (B) 제(a)(2)(A)항에 규정된 청구에 관하여 제(a)(1)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가 제기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
- (e) 당사자 명칭의 공표. — 협정 제4.3.11조에 따라, 재무장관은 자신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자의 명칭을 공표할 수 있다 —
- (1)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절차를 우회한 자; 또는
- (2) 자신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자.
- (f) 적격성 증명서. — 미국 국토안보부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국을 담당하는 무역 위원은 수입자가 협정의 부속서4-나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적절하게 작성하여 서명한 적격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g) 미합중국에서의 검증.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인 국가의 정부가 그 무역협정에 따른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재무장관은 그 정부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생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1)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위 협정에 따른 원산지 청구가 정확한지 여부; 또는
- (2) 미합중국으로부터 위 요청 당사국 정부의 영역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이동하는 데에 관여한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적용 가능한 관세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제208조. 규정의 제정.

재무장관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 제202조의 제(a)항 내지 제(n)항;
- (2) 제203조에 의한 개정; 그리고
- (3) 제202(o)조에 따른 공포.

제III편-수입에 대한 구제(Relief from Imports)

제301조. 정의.

본 편에서:

- (1) 대한민국 물품. - "대한민국 물품"이라 함은, 제202(b)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
- (2) 대한민국 자동차 물품. - "대한민국 자동차 물품"이라 함은, 제202(b)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서 호 8703 또는 8704에 규정된 상품을 말한다.
- (3) 대한민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 - "대한민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라 함은, 대한민국 물품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제3(5)조에 정의된 바에 따름)을 말한다.

A부-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수입에 대한 구제

제311조. 구제조치를 위한 행위 개시.

(a) 신청서의 제출. -

- (1) 원칙. -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의무를 조정할 목적으로 본 부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 기업, 공인되거나 인정된

연합체, 또는 근로자 단체를 포함한 실체가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사본을 미무역대표부로 전달하여야 한다.

- (2) 잠정적 구제조치. - 본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실체는, 마치 그 신청서가 1974년의 무역법 제202(a)조(19 U.S.C. 2252(a))에 따라 제출되었던 것처럼 잠정적 구제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 중대한 상황. - 중대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여하한 주장은 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b) 조사 및 결정. - 제(a)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d)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협정에 규정된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한 결과로서, 대한민국 물품의 수입이, 수입된 물품과 동종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대한민국 물품이 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조속히 개시하여야 한다.
- (c) 적용 가능한 규정. - 제(b)항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관하여는 1974년의 무역법 제202조(19 U.S.C. 2252)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1) 제(b)항의 제(1)(B)호 및 제(3)호.
 - (2) 제(c)항.
 - (3) 제(d)항.
 - (4) 제(i)항.
- (d) 조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물품들. - 협정 발효일 후에 본 부에 따라 대한민국 물품에 관하여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물품에 대하여는 본 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312조. 신청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치.

- (a) 결정. - 신청서에 관한 제311(b)조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120일(중대한 상황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는 그 조항

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b) 적용 가능한 규정. - 본 부에서, 1930년의 관세법 제330(d)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19 U.S.C. 1330(d) (1), (2) 및 (3))은, 마치 본 조에 따른 결정 및 사실관계 인정이 1930년의 무역법 제202조(19 U.S.C. 2252)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본 조에 따른 결정 및 사실관계 파악에 적용된다.

(c) 결정 내용이 수공인 경우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권고. -

- (1) 원칙. - 무역위원회가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제(a)항에 따라 내린 결정이 수공인 경우, 또는 대통령이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1930년의 관세법 제330(d)조의 제(1)호(19 U.S.C. 1330(d) (1))에 규정된 바와 같은 수공결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가 파악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또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맞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adjustment)하려는 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여, 이를 제(d)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2) 구제의 한계. - 본 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제313(c)조에 규정된 구제로 국한되어야 한다.
 - (3) 투표 및 별도의 의견. - 제(a)항에 따른 수공 쪽에 투표한 무역위원회 구성원만이 무역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에 대한 방지 및 구제조치에 관한 조치(안)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수공 쪽에 투표하지 아니한 무역위원회 구성원은 제(d)항에서 정하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에(있는 경우) 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d) 대통령에 대한 보고. - 어느 조사에 관한 결정이 제(a)항에 따라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무역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다음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a)항에 따른 결정 및 그런 결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
- (2) 제(a)항에 따른 결정이 수공인 경우에는, 제(c)항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및 권고사항과 그 권고사항 각각의 근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 (3) 제(1)호에 언급된 결정에 관한 무역위원회 구성원의 이견이나 별도의 의견과

제(2)호에 언급된 사실관계나 권고사항.

- (e) 공고. - 제(d)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제출되는 즉시, 무역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공고하고(무역위원회가 비밀사항이라고 결정하는 정보는 제외) 그 보고서의 개요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13조. 구제조치의 시행(PROVISION OF RELIEF).

- (a) 원칙. - 제312(a)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수궁이거나 또는 1930년의 관세법 제330(d)조 제(1)호(19 U.S.C. 1330(d)(1))에 따라 대통령이 수궁이라고 본다는 내용의 제312(a)조에 따른 결정이 담긴 무역위원회의 보고서를 대통령이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대통령은, 제(b)항을 전제로 하여, 무역위원회가 파악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또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맞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 (b) 예외. - 대통령이, 수입관련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비용보다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 (c) 구제조치의 내용. -
- (1) 원칙. - 제(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느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대통령이 본 조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협정의 부속서2-나에 따라 규정된 추가 인하를 중단시키는 것.
- (B)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다음 중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 (i) 수입관련 구제조치를 취할 당시 동종 물품에 대하여 HTS에 따라 부과되는 제1열의 일반관세율; 또는
- (ii) 협정 발효일 전의 날에 동종 물품에 대하여 HTS에 따라 부과되는 제1열

의 일반관세율.

- (2) 계절 기준으로 적용되는 관세. - 관세가 계절 기준으로 적용되는 물품 수입의 경우, 대통령이 본 조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협정의 부속서2-나에 따라 규정된 추가적인 인하를 중단시키는 것.
- (B)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다음 중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 (i)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정해지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동종 물품에 대하여 HTS에 따라 부과되는 제1열의 일반관세율; 또는
- (ii) 협정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HTS에 따라 부과되는 제1열의 일반관세율.
- (3) 점진적 자유화. - 본 조에 따라 정해진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대통령은 그 적용기간 중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협정 제10.2.7조에 규정되어있음) 정하여야 한다.
- (d) 구제조치의 기간. -
- (1) 원칙. - 제(2)호를 전제로 하여, 본 조에 따라 대통령이 취하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2년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 없다.
- (2) 연장. -
- (A) 원칙. - 제(C)목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은, 수공을 내용으로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1930년의 관세법 제330(d)조의 제(1)호(19 U.S.C. 1330(d)(1))에 따라 수공으로 보는 내용의 무역위원회 결정문을 제(B)목에 따라 수령한 이후, 본 조에 따라 정해진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유효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
- (i)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고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맞춰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계속 필요할 것; 그리고
- (ii) 위 산업이 수입경쟁에 맞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것.

(B) 무역위원회의 조치. -

(i) 조사. - 해당 업계의 대표자에 의해 신청서가 무역위원회에 제출되고 제 (a)항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의 종료일에 앞선 9월 전의 날로부터 6월 전의 날까지의 사이에, 무역위원회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서 본 조에 따른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업계에서 수입경쟁에 맞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ii) 공표 및 심리. - 무역위원회는 본 목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그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개심리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소비자들이 출석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상대방 당사자들과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밖에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iii) 보고. - 무역위원회는, 대통령이 다른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 (a)항에 따른 조치를 종료하기에 앞서 60일 전에 본 목에 따른 자신의 조사와 결정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기간. - 본 조에 따라 정해지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 없다.

(e)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종료 이후의 관세율. - 어떤 물품에 관한 본 조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종료되는 날로부터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그러한 구제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관세율이 된다.

(f) 구제조치에서 면제되는 물품. - 다음에 따라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 조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1) B부 또는 C부; 또는

(2)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 챕터 1(19 U.S.C. 2251 이하).

제314조. 구제권한의 종료.

(a) 원칙. - 제(b)항을 전제로 하여,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본 부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취할 수 없다.

- (b) 예외. - 본 부에 따라 구제조치가 취해지는 물품이, 협정의 부속서2-나 미합중국 양허표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이 넘게 규정되어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 이후로는 본 부에 따른 구제조치는 그 물품에 대하여 취할 수 없다.
- (c) 대통령의 결정. - 대한민국 물품의 경우, 본 항이 없었더라면 구제조치가 제(a)항 및 제(b)항에 따라 종료하였을 날 이후로는 본 부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구제조치에 동의하였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315조. 보상 권한.

1974년의 무역법 제123조(19 U.S.C. 2133)의 목적상, 제313조에 따라 대통령이 취하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동 법률 제II편의 챕터1(19 U.S.C. 2251 이하)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대우한다.

제316조. 비밀영업정보.

1974년의 무역법 제202(a)(8)조는 첫 번째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and"를 삭제; 그리고
- (2) 끝 부분에 있는 기간 앞에 ", and title III of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를 삽입한다.

B부-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21조. 자동차긴급수입제한조치.

A부의 규정은, 그 규정이 대한민국 물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물품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 (1) 제311(d)조 및 제313(c)조의 제(2)호와 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제313(d)(2)(A)조는 "1년" 대신 "2년"으로 대체하여 적용되어 운용된다.

- (3) 제313(d)(2)(C)조는 "3년"을 "4년"으로 대체하여 적용되어 운용된다.
- (4) 제313(f)(1)조는 "B부 또는 C부"를 "A부"로 대체하여 적용되어 운용된다.
- (5) 제314(b)조는 마치 그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적용되어 운용된다:

"(b) 예외. -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제201(d)조에 기재된 바대로, 또는 대한민국 자동차 물품이 제201(d)조에 언급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의 부속서2-나에 있는 미합중국 양허표에 기재된 바대로, 동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 중에 동 물품에 관하여 본 부에 따라 취할 수 있다."

C부-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31조. 구제조치를 위한 행위 개시.

- (a) 원칙. -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조정할 목적으로 본 부에 따른 조치를 위한 요청서는 이해관계자가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통령은 그 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대한 심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요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b) 요청의 공표. - 대통령이 보기에, 제(a)항에 따른 요청서에서 그 요청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였다는 공고와 그 요청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구하는 공고를 연방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 공고에는 해당 요청의 개요 및 의견과 반박이 수렴되어야 하는 기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2조. 결정 및 구제조치의 시행.

- (a) 결정. -
 - (1) 원칙. - 제331(b)에 따라 적극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대통령은,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섬유 및 의류 물품의 수

입이 수입된 물품과 동종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그 물품의 국내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조속히 개시하여야 한다.

(2) 심각한 손해. - 제(1)호에 따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증가된 수입이 특정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량, 생산성, 설비가동률,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대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변수 중 어떠한 것도 필연적으로 결정적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B) 기술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심각한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 요소로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b) 구제조치의 시행. -

(1) 원칙. - 제(a)에 따른 판단이 수긍인 경우, 대통령은 심각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제(2)항에 규정된 바대로, 위와 같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제조치의 내용. - 어느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대통령이 본 항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

(A)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협정의 부속서2-나에 따라 규정된 추가 인하를 중단시키는 것; 또는

(B)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다음 중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

(i)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취해질 당시 동종 물품에 대하여 HTS에 따라 부과되는 제1열의 일반관세율; 또는

(ii) 협정 발효일 전의 날에 동종 물품에 대하여 HTS에 따라 부과되는 제1열의 일반관세율.

제333조. 구제조치의 기간.

- (a) 원칙. - 제(b)항을 전제로 하여, 제332(b)조에 따라 대통령이 취하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2년을 넘어서 유지될 수 없다.
- (b) 연장. -
- (1) 원칙. - 제(2)호를 전제로 하여, 대통령은 본 부에 따라 취하는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
- (A) 심각한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고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맞춰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계속 필요할 것; 그리고
- (B) 위 산업이 수입경쟁에 맞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것.
- (2) 제한. - 본 부에 따라 취하는 구제조치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총 4년을 넘어서 유지될 수 없다.

제334조. 구제조치로부터 면제되는 물품.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어느 물품에 관하여 본 부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 (1) 그 물품에 관하여 본 부에 따라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이전에 취해졌던 경우; 또는
- (2) 그 물품이 다음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의 대상인 경우 -
- (A) A부; 또는
- (B)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 챕터 1(19 U.S.C. 2251 이하).

제335조. 수입관련 구제조치 종료 이후의 관세율.

본 부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가 어떤 물품에 대하여 종료되는 날에, 그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그러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유지되었을 관세율로 한다.

제336조. 구제권한의 종료.

협정에 따라 여하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그 물품에 관하여는 본 부에 따른 수입관련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337조. 보상권한.

1974년의 무역법 제123조(19 U.S.C. 2133)의 목적상, 본 부에 따라 대통령이 취하는 수입관련 구제조치는 동 법률 제II편의 챕터1(19 U.S.C. 2251 이하)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대우한다.

제338조. 비밀영업정보.

대통령은, 대통령이 비밀영업정보로 보는 것으로서 본 부에 따른 조사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비밀영업정보를 제출한 당사자가 그 제출 당시에, 그 정보를 대통령이 공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추후에 그 당사자가 그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당사자가 비밀영업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비밀영업정보가 요약되거나, 또는 필요시 그 정보가 삭제된, 그 정보의 비밀해제 버전도 제공하여야 한다.

D부-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에 따른 케이스

제341조. 대한민국 물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

- (a) 수입의 효과. - 무역위원회가,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1(19 U.S.C. 2251 이하)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서, 수궁결정을 하는 경우(또는 대통령이 1930년의 관세법 제330(d)조(19 U.S.C. 1330(d))의 사유로 인해 위 챕터에 따른 수궁결정과 같이 대우할 수 있는 결정), 무역위원회는 대한민국 물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여야 한다(그리고 그 피해 관련 결정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당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b) 대한민국 물품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 1에 따라 취하게 될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무역위원회가 제(a)항에 따라 부정적이라고 인정한 대한민국 물품에 대해서는 위 조치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제IV편-조 달

제401조. 적격제품.

1979년의 무역협정법 제308(4)(A)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vi)단 끝에 있는 "or"를 삭제한다.
- (2) 제(vii)단 끝에 있는 기간을 삭제하고 "or"를 삽입한다; 그리고
- (3) 다음의 신설 조항을 끝 부분에 추가한다:
"(viii)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 그 국가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미합중국에 의한 조달 관련 협정에 의해 포섭되는 지원기관"

제V편-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01조. 약 칭.

본 제목은 "2011년의 무역 구조조정 지원 연장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A부-무역 구조조정 지원 연장

제I장-무역 구조조정 지원 관련 규정의 적용

제511조. 무역 구조조정 지원 관련 규정의 적용

- (a) 스냅백의 폐지. - 2009년의 무역 및 세계화 구조조정 지원법(Public Law 111-5; 123 Stat. 422) 제1893조를 폐지한다.
- (b) 특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 본 부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2011. 2. 12.에 시행되던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 2 내지 챕터 6의 규정은(본 부에 의해 개정된 법률 포함) -
 - (1) 본 법률의 입법일에 시행되며; 그리고
 - (2)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 2, 3 또는 6에 따라 제출된 증명 신청에 적용된다.
- (c) 조항의 언급. - 본 부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부에서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 2 내지 6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킨다는 내용으로 개정이나 폐지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조항의 언급은 2011. 2. 12. 당시 시행 중일 때의 그 챕터 규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II장-근로자들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521조. 그룹 적격성 요건.

- (a)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19 U.S.C. 227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b)항을 삭제한다;
 - (2) 제(c)항 내지 제(f)항을 각각 제(b)항 내지 제(e)항으로 재지정한다;
 - (3) 재지정된 제(b)항 제(2)호에서, "(d)"를 삭제하고 "(c)"를 삽입한다;
 - (4) 재지정된 제(c)항에서 제(5)호를 삭제한다; 그리고

- (5) 재지정된 제(d)항의 제(2)호에서, "(b), or(c)"를 삭제하고 "or(b)"를 삽입한다.
- (b)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 1974년의 무역법 제247조(19 U.S.C. 2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3)호에서-
 - (A) 제(A)호의 앞에 있는 사항에서, "Subject to section 222(d)(5), the term"을 삭제하고 "The term"을 삽입한다; 그리고
 - (B) 제(A)호에서 ", service sector firm, or public agency"를 삭제하고, "or service sector firm"를 삽입한다;
 - (2) 제(7)호를 삭제한다; 그리고
 - (3) 제(8)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8)호로 재지정한다.

제522조. 교육 면제대상의 축소.

- (a)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31(c)조(19 U.S.C. 2291(c))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호에서 -
 - (A) 제(A)목, 제(B)목 및 제(C)목을 삭제한다; 그리고
 - (B) 제(D)목, 제(E)목과 제(F)목을 제(A)목, 제(B)목 및 제(C)목으로 각각 재지정한다; 그리고
 - (2) 제(3)(B)호에서, "(D), (E), or(F)"를 삭제하고 "or(C)"를 삽입한다.
- (b) 정당한 사유의 예외(GOOD CAUSE EXCEPTION). - 1974년의 무역법의 제 234(b)조(19 U.S.C. 2294(b))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다:

"(b) 청구서 제출 기간제한 또는 지연에 대한 면책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특별 규정. - 장관은 무역재정비(trade readjustment) 허용 신청 또는 본 챕터에 따른 교육 등록 신청에 관한 기간제한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면책을 허용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23조. 무역재정비 수당에 대한 제한.

1974년의 무역법 제233조(19 U.S.C. 229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a)항에서-

(A) 제(2)호에서, 제(A)목 앞에 있는 사항에서, "(or"와 그 다음에 나오는 "period)"까지를 전부 삭제한다; 그리고

(B) 제(3)호에서-

(i) 제(A)목의 앞에 있는 사항에서, "78"을 삭제하고 "65"를 삽입한다; 그리고

(ii) 각 부분에 나와 있는 "91-week period"를 삭제하고 "78-week period"를 삽입한다; 그리고

(2) 제(f)항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다:

"(f)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역 재정비 수당의 지급. - 본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근로자들이 제236조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승인된 교육으로서, 학위 또는 업계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을 이수하게끔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장관이 그 근로자가 본 챕터에 따라 무역 재정비 수당에 대한 권리를 달리 가지는 마지막 주 이후에 있는 정당한 사유 또는 교육의 결석을 고려하여 결정한 적격기간 범위에 속하는 13주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 재정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그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13주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 재정비 수당의 지급이 필수적일 것;

"(2) 그 근로자가 교육에 매주 참여할 것; 그리고

"(3) 그 근로자가 -

"(A) 그 근로자에 대해 승인된 교육의 일환으로 정해진 성적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것;

"(B)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지속적인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될 것; 그리고

"(C) 위 적격기간 동안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

제524조. 교육, 고용 및 사안별 관리 서비스, 그리고 취업준비 및 재배치 수당을 위한 자금조달.

(a)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36(a)(2)조(19 U.S.C. 2296(a)(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to carry out this section"가 나와 있는 각각의 위치 뒤에 "and sections 235, 237, and 238"를 삽입한다;

(2) 제(A)목에서 -

(A) 제(i)단 앞에 있는 사항에서, "of payments that may be made under paragraph (1)"를 삭제하고 "of funds available to carry out this section and sections 235, 237, and 238"를 삽입한다; 그리고

(B) 제(i)단 및 제(ii)단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i)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575,000,000; 그리고

"(ii) 2013. 10. 1.에 시작하여 2013. 12. 31.에 종료하는 3월의 기간에 대해 \$143,750,000.";

(3) 제(C)(ii)(V)목에서,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training under this section"을 삭제하고, "to carry out this section and sections 235, 237, and 238"를 삽입한다; 그리고

(4) 제(E)목에서, "to pay the costs of training approved under this section"을 삭제하고 "to carry out this section and sections 235, 237, and 238"를 삽입한다.

(b) 관리경비와 고용 및 사안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한. -

(1) 일반, 1974년의 무역법 제235A조(19 U.S.C. 2295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표제 부분에서, "FUNDING FOR"를 삭제하고, "LIMITATIONS ON"를 삽입한다; 그리고

(B) 제(a)항 및 제(b)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한 회계연도에 대해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기 위해 주(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중... 그 주는 다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본 챕터에 따른 근로자 프로그램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10퍼센트 이하.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제231조에 따른 교육요건 처리 면제;

"(B) 본 챕터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의 취합, 인준 및 보고; 그리고

"(C) 제246조에 따른 재고용 무역 구조조정 지원의 제공; 그리고

"(2) 제235조에 따른 고용 및 사안별 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5퍼센트 이하.".

(2) 실무적인 개정. - 1974년의 무역법의 목차에서 제235A조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제235A조. 관리경비과 고용 및 사안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한.".

(c) 자금의 재배정. - 1974년의 무역법 제245조(19 U.S.C. 2317)에서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c) 자금의 재배정. -

"(1) 원칙. -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도록 주(州)에 배정되었던 자금으로서, 그 자금이 그 주에 제공되었던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로부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회계연도 중에 그 주가 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한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위와 같이 재배정된 자금을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도록 여러 주(州)에 제공할 수 있다.

"(2) 여러 주에 의한 요청. - 제(1)(B)호에 따른 절차를 정함에 있어서는, 장관은 그 조항에 따라 재배정된 자금을 여러 주에서 제출한 요청서에 따라 그 자금의 수요대로 배포하는 것을 정하는 절차도 포함시켜야 한다.

"(3) 금액의 사용 가능성. - 제(1)호에 따라 자금을 재배정하더라도 그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

(d) 취업준비 수당. - 1974년의 무역법 제237조(19 U.S.C. 229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a)(1)항에서 -

(A)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근로자"를 삭제하고, "각 주(州)는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자금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그리고

(B) "may"를 삭제하고 "to"를 삽입한다;

(2) 제(b)항에서 -

(A) 제(1)호에서 -

(i) "An"을 삭제하고, "Any"를 삽입한다; 그리고

(ii) "모든 필요한 취업준비 경비"를 삭제하고 "그 근로자에게 필요한 취업준비 경비의 90퍼센트 이하"를 삽입한다; 그리고

(B) 제(2)호에서, "\$1,500"를 삭제하고 "\$1,250"를 삽입한다; 그리고

(3) 제(c)항에서 "the Secretary shall"를 삭제하고, "a State may"를 삽입한다.

(e) 수당의 재배정. - 1974년의 무역법 제238조(19 U.S.C. 229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a)(1)항에서 -

(A)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근로자"를 삭제하고, "각 주(州)는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자금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그리고

(B) "may file"를 삭제하고 "to file"을 삽입한다; 그리고

(2) 제(b)항에서 -

(A) 제(1)호 앞의 사항에서 -

(i) "The"를 삭제하고 "Any"를 삽입한다; 그리고

(ii) "includes"를 삭제하고 "shall include"를 삽입한다;

(B) 제(1)호에서, "all"을 삭제하고 "not more than 90 percent of the"를 삽입한다; 그리고

(C) 제(2)호에서 "\$1,500"를 삭제하고 "\$1,250"를 삽입한다.

(f)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 1974년의 무역법 제236조(19 U.S.C. 229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b)항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appropriate"를 삭제하고 "appropriate"를

삽입한다; 그리고

(2) 제(g)항을 삭제하고 제(h)항을 제(g)항으로 재배정한다.

제525조. 재고용 무역 구조조정 지원.

(a)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46(a)조(19 U.S.C. 2318(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3)(B)(ii)호에서 "\$55,000"를 삭제하고 "\$50,000"를 삽입한다; 그리고

(2) 제(5)호에서 -

(A) 제(A)(i)목에서, "\$12,000"를 삭제하고 "\$10,000"를 삽입한다; 그리고

(B) 제(B)(i)목에서, "\$12,000"를 삭제하고 "\$10,000"를 삽입한다.

(b) 연장. - 1974년의 무역법 제246(b)(1)조(19 U.S.C. 2318(b)(1))에서 "2011. 2. 12."를 삭제하고 "2013. 12. 31."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제526조.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a) 실적의 핵심 지표. -

(1)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39(j)(2)(A)조(19 U.S.C. 2311(j)(2)(A))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다:

"(A) 원칙. - 본 호에 규정되어있는 실적의 핵심지표는 다음과 같다 -

"(i) 본 챕터에 따른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그 혜택 수령을 중단한 때가 속하는 분기로부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분기 중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비율;

"(ii) 위와 같은 근로자가 제(i)단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된 때가 속하는 가장 빠른 분기의 다음에 오는 2개 분기 중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비율;

"(iii) 제(ii)단에 규정된 2개 분기 중에 고용되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평균 수입; 그리고

"(iv) 위와 같은 근로자가 본 챕터에 따른 혜택을 수령하는 동안 또는 그러한 혜택의 수령을 중단한 때로부터 1년 동안, 업계의 공인자격증을 포함한 공인 중등자격증을 취득하는 근로자들, 또는 제(i)단에 따른 고용이 함께

되어있는 경우에는 중등교육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증서를 취득하는 근로자들의 비율."

(2) 시행일. - 제(1)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

(A) 2011. 10. 1.에 시행; 그리고

(B) 2011. 10. 1. 전, 당일 또는 후에 체결되는 1974년의 무역법 제239조(19 U.S.C. 2311)에 따른 협약에 관하여 적용된다.

(b) 데이터의 수집 및 공포. -

(1)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49B(b)조(19 U.S.C. 2323(b))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2)호에서 -

(i) 제(B)목에서, "재정비 수당" 다음에 "(제233(a)조 제(1)호 및 제(3)호와 제233(f)조 각각에 따른 지급별로 분류되는 위와 같은 수당을 포함하여) 및 제246조에 따른 지급"를 삽입한다; 그리고

(ii)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D) 무역 재정비 수당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 주(週) 수.

"(E) 근로자들이 본 조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계연도 전의 10회계연도 중 어느 연도에든 본 챕터에 따라 발급되는 이전의 증명서에 따른 혜택을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는 근로자들의 수";

(B) 제(3)호에서 -

(i) 제(A)목에서, "원격지 교육" 다음에 "관련 학위를 받도록 하는 교육, 보충 교육, 필수교육"을 삽입한다;

(ii) 제(B)목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다:

"(B) 예비해고 교육 또는 시간제 교육에 등록된 자로서 그 교육 기간 중 어느 때에든 제236조에 따라 승인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수";

(iii) 제(C)단에서, "교육" 다음에 ", 그리고 보충 또는 필수 교육을 포함하지 아니한 평균 교육기간"을 삽입한다;

(iv) 제(E)목에서, "기간"을 삭제하고 "평균기간"을 삽입한다; 그리고

(v) 제(F)목에서, "교육" 다음에 "그리고 위 교육의 평균기간"을 삽입한다; 그리고

(C) 제(4)호에서 -

(i) 제(B)목을 제(D)목으로 재지정하고; 그리고

(ii) 제(A)목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B) 제239(j)조에서 정한 분기 보고서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데이터로서 그 근로자들의 나이, 프로그램 전의 교육 수준, 프로그램 후의 자격증 취득별로 분류된 데이터 요약.

"(C) 근로자들이 본 챕터에 따른 혜택의 수령을 중단한 분기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분기 동안 받은 제239(j)(2)(A)(i)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평균 수입. 이 수입은 그 근로자가 본 챕터에 따른 혜택을 받기 시작한 분기 전의 3개 분기 동안 받은 그 근로자의 평균 수입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것."; 그리고

(D)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6) 소요 금액에 대한 데이터. -

"(A) 무역 재정비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금의 총액(총합계 금액 및 각 주별 금액).

"(B)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주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총금액(총합계 금액 및 각 주별 금액).

"(C)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주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용을 위해 사용되는 총금액(총합계 금액 및 각 주별 금액).

"(D) 제235조 내지 제238조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주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업준비 및 재배정 수당을 위해 사용되는 총금액(총합계 금액 및 각 주별 금액).".

(2) 시행일. - 2011. 10. 1. 이전까지, 노동부 장관은 1974년의 무역법 제 249B(a)조(19 U.S.C. 2323(a))에서 정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제(1)호에 따른 개정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보고를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차보고. - 1974년의 무역법 제249B(d)조에서 "12월 15일"을 삭제하고 "2월 15일"을 삽입한다.

제527조. 연장.

1974년의 무역법 제245B(a)조에서 "2011년 2월 12일"을 삭제하고 "2013년 12월 31일"을 삽입한다.

제III장- 그 밖의 구조조정 지원

제531조. 기업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a) 연차 보고. -

(1)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3(19 U.S.C. 2341 이하)에서 제 255조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제255A조. 기업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연차 보고.

"(a) 원칙. - 2012. 12. 15.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년, 장관은 본 챕터에 따른 기업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전(前) 회계연도의 데이터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 질의해온 기업의 수.
- "(2) 제251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의 수.
- "(3) 장관이 확인 및 거절한 신청의 수.
- "(4) 신청이 제출된 후 그 신청 처리를 위한 평균 시간.
- "(5) 미합중국 의회 선거구 각각에 대하여 확인된 기업 및 제출된 신청의 수.
- "(6) 제출된 신청의 수 중에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
- "(7) 신청을 준비하면서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
- "(8) 사업복구계획을 개발하는 내용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
- "(9) 장관이 승인 및 거부한 사업복구 계획의 수.
- "(10) 제253(b)(1)조에 언급된 중개기관이 전국 및 각 지역별로 제공한 위 프로그램에 따라 수령된 혜택의 평균 기간.
- "(11) 확인 당시 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별 매출, 고용 및 생산성.
- "(12) 위 프로그램을 완료할 당시와, 및 위 프로그램을 완료한 이후 2년 중의 각

연도의 기업별 매출, 고용 및 생산성.

"(13) 보고일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수와 위 프로그램 완료 후 운영을 중단한 기업의 수 그리고 위 프로그램 완료 후 2년 동안 운영을 중단한 기업의 수(연도별로).

"(14)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받는 재정지원.

"(15)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기업에 의한 재정적 기여.

"(16)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복구계획에 포함된 기술지원 형태.

"(17) 기업의 사업복구계획에 있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전에 위 프로그램을 이탈한 기업의 수 및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

"(18) 제253(b)(1)조에 언급된 모든 중개기관이 소비한 총금액 및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위와 같은 각각의 중개기관.

"(19) 중개기관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 중개기관이 사용한 총금액.

"(b) 데이터의 분류. -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장관은 제(a)항에서 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함에 있어서, 중개기관, 주 및 전국 전체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야 한다.

"(c) 의회에 대한 보고. -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제(a)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상원의 재정위원회와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 연방관보와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그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d) 비밀정보의 보호. -

"(1) 원칙. - 장관은 제(a)항에 규정된 정보 가운데 장관이 비밀영업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비밀영업정보를 제출한 자가 그 제출 당시에, 그 정보를 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추후에 그 자가 그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석의 원칙. - 본 항에 있는 규정을 해석하되, 장관이 제(1)호에 따라 비밀영업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정보를 그 장관이 판사실을 통해 법원에 제공하거나 또는 법원의 보호명령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실무적인 개정. - 1974년의 무역법의 목차에서, 제255조와 관련한 항목 뒤에 다음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제255A조. 기업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연차보고."

- (3) 일치시키기 위한 폐지. - 상무부 장관이 2011 회계연도에 대하여 무역 및 세제화 구조조정 지원법 제1866조(19 U.S.C. 2356)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동 조는 폐지된다.

- (b) 연장. - 1974년의 무역법 제255(a)조(19 U.S.C. 2345(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50,000,000"와 그 뒤에 "2011년 2월 12일"까지의 전부를 삭제하고,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16,000,000, 그리고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3월 동안 \$4,000,000"를 삽입한다; 그리고
- (2) "shall-"과 그 뒤의 "otherwise remain"까지 모두를 삭제하고 "shall remain"을 삽입한다.

제532조. 사회를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 (a)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4(19 U.S.C. 2371 이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서브챕터 A, C 및 D를 삭제한다;
- (2) 서브챕터B에서 서브챕터 표제를 삭제한다; 그리고
- (3) 제278조 및 제279조를 각각 제271조 및 제272조로 재지정한다.

- (b) 연차보고. -

- (1) 원칙. - 제(a) (3)항에 따라 재지정된 1974년의 무역법 제272조 제(e)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제(1)호 앞의 사항에서, "2009년부터 ... 까지의 기간 중 매년 12월 15일"을 삭제하고 "2009년 12월 15일"을 삽입한다;
- (B) 제(1)호에서, 끝 부분에 있는 "and"를 삭제한다;

(C) 제(2)호에서, 끝 부분에 있는 기간을 삭제하고 ";and"를 삽입한다; 그리고

(D)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3) 프로그램 실적 및 결과물과 관련한 다음의 데이터를 제공함:

"(A) 부여된 허가사항들 중, 피보증인이 실제 소비한 자금의 액수.

"(B) 부여된 허가사항의 평균 달러액.

"(C) 부여된 허가사항의 평균 기간.

"(D) 챕터2에 따른 혜택을 수령하는 교육생들의 비율.

"(E) 챕터2에 따른 혜택을 수령하는 교육생들 중 학위를 취득한 교육생의 비율 및 수, 그리고 제236조에 따라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평균 참여기간.

"(F) 챕터2에 따른 혜택을 수령하는 교육생들 중 학위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수 및 제236조에 따른 교육 중에 있는 그 학생들의 평균 참여기간."

(2) 시행일. - 제(2)호에 따른 개정사항은 -

(A) 2011. 10. 1. 시행되며; 그리고

(B) 2012. 10. 1. 이후에 1974년의 무역법 제278(e)조(19 U.S.C. 2372(e))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c) 실무적인 변경. - 1974년의 무역법의 목차에서 제II편의 챕터4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챕터4-사회를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제271조.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 및 경력교육 부여 프로그램

"제272조. 세출의 승인"

제533조. 농부들에 대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a) 연차보고. -

(1) 원칙. - 1974년의 무역법 제293(d)조(19 U.S.C. 2401(b))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다:

"(d) 연차보고. - 매년 1월 30일 이전에, 장관은 본 챕터에 따른 농부를 위한 무역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前)회계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한 보고서를 상원의 재정위원회와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 챕터에 따른 확인이 적용되는 농산품의 목록.
 - "(2) 농산품이 생산되는 주(州) 및 지역, 그리고 그 주나 지역 각각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품의 총량.
 - "(3) 제출된 신청의 수.
 - "(4) 장관이 확인 및 거부한 신청의 수.
 - "(5) 신청 처리를 위한 평균 시간.
 - "(6) 미합중국 의회 선거구 각각에 대하여 승인된 농산품 생산자 및 제출된 신청의 수.
 - "(7) 승인된 생산자의 수 가운데에서, 위 프로그램에 진입하여 혜택을 받은 농산품 생산자의 수.
 - "(8) 기초기술지원을 이수한 농산품 생산자의 수.
 - "(9) 심화교육지원을 이수한 농산품 생산자의 수.
 - "(10) 장관이 승인 및 거부한 최초 사업계획의 수.
 - "(11) 장관이 승인 및 거부한 장기 사업계획의 수.
 - "(12) 본 챕터에 따라 기초기술지원 및 심화기술지원을 받은 각각의 농산품 생산자의 총수(의회선거구별).
 - "(13)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산품 생산자가 수령한 기초기술지원의 유형.
 - "(14)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산품 생산자가 받은 심화기술지원의 유형.
 - "(15) 자신의 장기 사업계획에 있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전에 위 프로그램을 이탈한 농산품 생산자의 수 및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
 - "(16) 본 챕터에 따른 혜택을 받은 농산품 생산자의 총수(의회선거구별).
 - "(17) 본 챕터에 따라 받은 혜택의 평균기간.
 - "(18) 보고서 작성일 현재 사업 중인 농산품 생산자의 수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그리고 위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후에 사업을 중단한 농산품 생산자의 수.
 - "(19) 보고서 작성일 전의 10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든 농산품 생산자가 본 챕터에 따라 발급된 이전의 확인서에 따라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생산자의 수."
- (2) 시행일. - 제(1)호에 따른 개정사항은 -
- (A) 2011. 10. 1. 시행; 그리고

(B) 2012. 10. 1. 이후에 1974년의 무역법 제293(d)조(19 U.S.C. 2401b(d))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b) 연장. - 1974년의 무역법 제298(a)조(19 U.S.C. 2401g(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and there are appropriated"를 삭제한다; 그리고
- (2) "초과하지 않는" 및 그 뒤에 나오는 "2011. 2. 12."까지를 전부 삭제하고,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90,000,000를, 그리고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3개월에 대해 \$22,500,000를 초과하지 않는"을 삽입한다.

제Ⅳ장-일반규정

제541조. 무역 구조조정 지원 규정의 적용 가능성.

(a)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

(1) 2011. 2. 13. 이후, 입법일 전에 제출된 신청서. -

(A) 입법일 전에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확인. -

(i)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 - 본 법률의 입법일 현재, 노동부 장관이 어느 일군(一群)의 근로자들이 제(iii)단에 규정된 신청에 의해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장관은 위의 법률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의 요건에 기초하여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ii) 확인 거절사항에 대한 재심사. - 본 법률의 입법일 전에, 장관이 어느 일군(一群)의 근로자들이 제(iii)단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 (I) 그 결정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 (II) 그 근로자군(群)이 위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군이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확인해주어야 한다.
- (iii) 규정된 신청. - 본 단에 규정된 신청은 2011. 2. 13. 이후로부터 본 법률의 입법일 전 사이에 1974년의 무역법 제221조에 따라 제출된 일군(一群)의 근로자들에 대한 자격 확인 신청이다.
- (B)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 (i) 원칙. - 제(ii)단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제(A)(iii)목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 받은 근로자는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위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 챕터2의 규정에 따른 혜택만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ii) 입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선택권. -
 - (I) 원칙. - 제(A)(iii)목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1974년의 무역법 제222조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 받은 근로자로서,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2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위 입법일로부터 15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 (aa) 위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 챕터2의 규정에 따른 혜택; 또는
 - (bb) 2011. 2. 13. 현재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2에 따른 혜택.
 - (II)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150일이 되는 날 이전까지(I)에 규정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I)에 규정된 근로자는 2011. 2. 13.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2에 의한 혜택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III) 최대혜택의 계산. - 어느 근로자가(I)에 규정된 선택을 하기 전에, 2011. 2. 13.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2에 따라

그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그 근로자가 본 법률의 입법일이나 또는 2011. 2. 13. 중(I)에 따라 그 근로자가 선택을 한 이후에 적용되는 날 당시에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2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가지는 최대혜택의 결정에 포함된다.

- (2) 2011. 2. 13. 전에 제출된 신청. - 1974년의 무역법 제221조에 의해 제출된 신청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 받은 근로자는 -
 - (A) 2009. 5. 18. 이후로부터 2011. 2. 12. 이전까지, 2011. 2. 12. 당시 시행 중인 위의 법률 제II편의 챕터2 규정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고 또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 (B) 2009. 5. 18. 전까지, 2009. 5. 17. 당시 시행 중인 위의 법률 제II편의 챕터2 규정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고 또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 (3) 입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는 신청에 관한 적격자의 구분. - 본 법률의 입법일 이후로부터 그 입법일 후 90일이 되는 날 이전까지, 1974년의 무역법 제221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따라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일군(一群)의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확인과 관련하여, 위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223(b)조는 "위와 같은 확인이 부여된 신청서의 날짜 전에 1년 넘게"를 "2010. 2. 13. 전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또한 그와 같이 운용된다.
- (b) 기업을 위한 무역 구조조정 지원. -
 - (1) 입법일 전에 확인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확인. -
 - (A)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 - 본 법률의 입법일 현재, 상무부 장관이 어느 기업이 제(C)목에 규정된 신청에 의해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그 장관은 위의 법률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의 요건에 기초하여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B) 확인 거절사항에 대한 재심사. - 본 법률의 입법일 전에, 장관이 어느 기업

이 제(C)목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 (i) 그 결정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 (ii) 그 기업이 위 입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기업이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확인해주어야 한다.

(C) 규정된 신청. - 본 목에 규정된 신청은 2011. 2. 13. 이후로부터 본 법률의 입법일 전 사이에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에 따라 어느 기업이나 그 대표자가 제출한 자격확인 신청이다.

(2) 2011. 2. 13.부터 입법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확인. - 상무부 장관은 어느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의 입법일 현재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에 따른 무역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해주어야 한다 -

(A) 장관이 보기에 그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였다면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 (i) 그 기업이나 그 대표자가 2011. 2. 13.에 시작하여 본 법률의 입법일 전의 날에 종료하는 기간에 속하는 어느 날에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에 따른 자격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경우; 그리고
- (ii) 위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II편의 챕터2 규정이 제(i)단에 규정된 기간 중에도 시행 중이었던 경우; 그리고

(B) 위 입법일 후 90일 이내에, 그 기업이나 그 대표자가 1974년의 무역법 제251조에 따른 자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42조. 종료 규정.

1974년의 무역법 제285조(19 U.S.C. 2271 주석)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2011. 2. 12."를 각각의 위치에서 삭제하고, "2013. 12. 31."를 삽입한다;
- (2) 제(a)(2)항에서 -
 - (A) 제(A)목 앞의 사항에서, "that chapter"와 그 뒤로 "the worker is-"까지

이어지는 전부를 삭제하고 "that chapter if the worker is—"를 삽입한다;
그리고

(B) 제(A)목에서, "petitions"를 삭제하고 "a petition"를 삽입한다; 그리고

(3) 제(b)항에서 -

(A) 제(1)(B)호에서, 제(1)단 앞에 있는 사항에서 "chapter 3" 뒤에
"pursuant to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251"을 삽입한다;

(B) 제(2)(B)호에서, 제(i)단의 앞에 있는 사항에서, "chapter 6" 뒤에; 그리고

(C) 제(3)호를 삭제한다.

제543조. 일몰조항.

(a) 이전 법령의 적용. - 제(b)항을 전제로 하여, 2011. 2. 13.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 챕터2, 3, 5 및 6의 규정들(19 U.S.C. 2271 이하)은 2014. 1. 1.로부터 적용하되, 다만 위 챕터를 적용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위의 법 제231(c)조 제(1)호는, 마치 그 호의 제(A)목, 제(B)목 및 제(C)목이 시행 중이지 않았던 것처럼 적용되고 운영되며;

(2) 위의 법 제233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운용된다 -

(A) 제(a)(2)항에서, "104-week period" 및 그에 이어 "130-week period)"까지 나오는 전부를 "104-week period"로 대체; 그리고

(B) 마치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읽히도록 제(g)항을 적용하고 운용한다:

"(g)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역 구조조정 수당의 지급. - 본 조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제23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승인된 교육으로서 학위 또는 업계의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관이 또는 그 근로자가 본 챕터에 따라 무역 재정비 수당에 대한 권리를 달리 가지는 마지막 주 이후의 정당한 사유 및 교육의 결석을 고려하여 결정한 적격기간 범위에 속하는 13주 이내의 기간 동안 무역 재정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그 근로자가 13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무역 재정

비 수당의 지급이 필수적일 것:

"(2) 그 근로자가 교육에 매주 참여할 것; 그리고

"(3) 그 근로자가 -

"(A) 그 근로자에 대해 승인된 교육의 일환으로 정해진 성적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것;

"(B) 해당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계속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될 것; 그리고

"(C) 위 적격기간 동안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 ‘

(3) 위의 법 제245조는 "2007"를 "2014"로 대체되어 적용 및 운용된다;

(4) 위의 법 제246(b)(1)조는, "5년이 되는 날"과 그 뒤로 "State"까지 나오는 전부를 "2014. 12. 31."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운용한다;

(5) 위의 법 제256(b)조는, "2003회계연도 내지 2007 회계연도 각각 및 2007. 10. 1.에 시작하는 3월의 기간에 대해 \$4,000,000"를 "2014. 1. 1.로부터 시작하는 1년의 기간"으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운용한다;

(6) 위의 법 제298(a)는, "회계연도 각각"과 그 뒤로 "2007.10.1."까지 나오는 전부를 "2014. 1. 1.로부터 시작하는 1년의 기간"으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운용한다; 그리고

(7) 위의 법 제285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운용한다 -

(A) 제(a)항에서, "2007"이 나오는 각각의 부분을 "2014"로 대체; 그리고

(B) 제(b)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적용하고 운용한다:

"(b) 그 밖의 지원. -

"(1) 기업을 위한 지원. -

"(A) 원칙. - 제(B)목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2014. 12. 31. 이후에는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B) 예외. - 제(A)목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이전까지 챕터3에 따라 승인된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

"(i)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위 챕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그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경우.

"(2) 농부. -

"(A) 원칙. - 제(B)목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2014. 12. 31. 이후에는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B) 예외. - 제(A)목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이전까지 챕터6에 따라 승인된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i)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위 챕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그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경우.".

(b) 예외. - 본 법률의 입법일 당시 시행 중인 1974년의 무역법 제II편의 챕터 2, 3, 5 및 6은 다음의 자와 관련하여서는 2014. 1. 1.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

(1) 2014. 1. 1. 전에 위의 법 제221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동법 제II편의 챕터2에 따른 무역 구조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 받은 근로자;

(2) 2014. 1. 1. 전에 위의 법 제251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동법 제II편의 챕터3에 따른 기술지원이나 허가(gran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 받은 기업; 그리고

(3) 2014. 1. 1. 전에 위의 법 제292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동법 제II편의 챕터6에 따른 기술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 받은 기업.

B부-보건범위의 개선

제551조. 보건의료 관련 세금공제.

(a) 공제의 종료. - 1986년의 내국세법 제35(b)(1)조의 제(B)목에서, 기간 앞에 ", and before January 1, 2014"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b) 만료된 특정 공제규정의 공제 종료일까지의 연장. -

- (1) 인상된 공제율의 부분 연장. - 위 세법 제35(a)조에서, "65퍼센트(2011. 2. 13. 이전에 적격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삭제하고 "72.5퍼센트"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 (2) 선급규정의 연장. -
 - (A) 위 세법 제7527(b)조에서 "65퍼센트(2011. 2. 13. 전에 적격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삭제하고 "72.5퍼센트"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 (B) 위 세법 제7527(d)(2)조에서 "which is issued before February 13, 2011"를 삭제하여 개정한다.
 - (C) 위 세법 제7527(e)조에서 "80퍼센트"를 삭제하고 "72.5퍼센트"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 (D) 위 세법 제7527(e)조에서, "2011. 2. 13. 전에 적격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를 삭제하여 개정한다.
- (3) 그 밖의 특정한 관련 규정의 연장. -
 - (A) 위 세법 제35(c)(2)(B)조에서 "and before February 13, 2011"를 삭제하여 개정한다.
 - (B) 위 세법 제35(e)(1)(K)조에서, "In the case of eligible coverage months beginning before February 13, 2012, coverage"를 삭제하고 "Coverage"를 삽입하여 개정한다.
 - (C) 2009년의 미국복구 및 채투자 세법 제1899E(a)조에 의해(특정 사유 이후 가족구성원이 계속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된 위 내국세법 제35(g)(9)조에서, "적격기간이 2011. 2. 13. 전에 시작되는 경우. -"를 삭제하여 개정한다.
 - (D) 1998년의 인력채투자법 제173(f)(8)조에서, "적격기간이 2011. 2. 13. 전에 시작되는 경우. -"를 삭제하여 개정한다.
- (c) 시행일. -
 - (1) 원칙. - 본 항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의한 개정사항은 2011. 2. 12. 후에 시작되는 기간범위에 적용한다.
 - (2) 선지급 규정. -
 - (A) 제(b)(2)(B)항에 의한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후에 발행된 확인서에 적용된다.

(B) 제(b) (2) (D)항에 의한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시작되는 기간범위에 적용된다.

제552조. 공제가능 기간에 있어서 63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TAA 사전확인 기간.

(a) 원칙. - 다음의 규정들에서 각각 "2011. 2. 13."을 삭제하고 "2014. 1. 1."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1) 1986년의 내국세법 제9801(c) (2) (D)조.

(2) 1974년의 피고용자 퇴직소득보장법 제701(c) (2) (C)조(29 U.S.C. 1181(c) (2) (C)).

(3)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01(c) (2) (C)조(2014년 1월 전에 시작되는 계획연도 중에 시행 중인 것에 따름).

(4)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04(c) (2) (C)조(2014년 1월 전에 시작되는 계획연도 중에 시행 중인 것에 따름).

(b) 시행일. -

(1) 원칙. -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1. 2. 12. 후에 시작되는 계획연도에 적용된다.

(2) 경과규정. -

(A) 혜택의 결정. -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그리고 그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2011. 2. 13.에 시작하여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30일째에 종료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혜택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혜택결정을 위와 같이 수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간 중에 1986년의 내국세법 제35(e)조에서 의미하는 건강보험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B) 입법일로부터 30일 후의 날 전의 기간에 관한 지침. - 제(A)목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재무부 장관(또는 그가 지명한 자)은 보건인권부 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30일 후의 날 전의 기간

에 대한, 본 조에 의한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및 여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C) 특정 보장손실과 관련한 특례 규정. - 2011. 2. 13.에 시작하여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30일 후의 날에 종료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TAA-관련한 보장 손실이(1986년 내국세법 제4980B(f)(5)(C)(iv)조에 정의된 바에 따름) 있는 경우, 1986년의 내국세법 제9801(c)(2)(D)조, 1974년의 피고용자 퇴직소득보장법 제701(c)(2)(C)조 및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01(c)(2)(C)조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위의 입법일로부터 30일 후까지 연장된다.

제553조. 특정 TAA-적격개인 및 PBGC 수취인을 위한 COBRA 혜택의 연장.

- (a) 원칙. - 다음의 규정들에서 각각 "2011. 2. 12."을 삭제하고 "2014. 1. 1."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 (1) 1974년의 피고용자 퇴직소득 보장법 제602(2)(A)(v)조(29 U.S.C. 1162(2)(A)(v)).
 - (2) 위 법의 제602(2)(A)(vi)조.
 - (3) 1986년의 내국세법 제4980B(f)(2)(B)(i)(V)조.
 - (4) 위 내국세법 제4980B(f)(2)(B)(i)(VI)조.
 - (5)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202(2)(A)(iv)조(42 U.S.C. 300bb-2(2)(A)(iv)).
- (b) 시행일. -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30일 후의 날 이후에 종료하는(본 조에 의한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보장 기간에 적용된다.

C부-대응구배(offset)

제I장-실업 보상 프로그램 통합(integrity)

제561조. 기망적 청구에 대한 강제적 벌금의 부과.

(a) 원칙. -사회보장법 제303(a)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0)호에서, 제(B)목의 끝에 있는 기간을 삭제하고 "; and"를 삽입한다;
그리고

(2) 끝 부분에 다음의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

"(11) (A) 주(州)기관이, 어떤 자가 행한 기망행위로 인해 주기관의 실업기금으로부터 그 자에게 오(誤)지급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 오(誤)지급 금액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의 그 개인에 대한 부과; 그리고

"(B) 제(A)목에 따라 납부되는 모든 부과금은 그 주의 실업기금으로 즉시 예치함."

(b) 연방지급에 대한 적용. -

(1) 원칙. - 미합중국의 실업보상 프로그램(제(2)호에 정의된 바에 따름)을 운영하는 조건으로서, 그 주가 어떤 자가 행한 기망(欺罔)행위로 인해 위 프로그램에 따라 그 자에게 오(誤)지급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주는 자신이 사회보장법 제303(a)(11) 조를(제(a)항에 의해 추가된 바에 따름) 이행하는 주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벌금을 부과 및 예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납부 받은 벌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정의. - 본 항에서, "미합중국의 실업보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

(A) 미국법령집 제V편의 챕터85의 서브챕터I에 따른 연방시민 피고용자들을 위한 실업보상;

(B) 미국법령집 제V편, 챕터85, 서브챕터II에 따른 퇴역군인들에 대한 실업보상;

(C) 1974년의 무역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19 U.S.C. 2291-2294)에 따른 무역 재정비 수당;

(D) Robert T. Stafford 재난구제 및 응급지원법 제410(a)조(42 U.S.C. 5177(a))에 따른 재난실업지원;

(E) 실업보상에 대한 연방의 임시연장 조치;

(F)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급 실업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하한 연방 프로그램; 그리고

(G) 그 밖에 실업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는 연방 프로그램.

(c) 시행일. -

- (1) 원칙. - 제(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시작되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입증된 오(誤)지급에 대해 적용된다.
- (2) 승인. - 주(州)는 위와 같은 개정사항이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증되는 오(誤)지급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자신의 주(州)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제562조. 고용자의 잘못에 대한 부담 면책의 금지.

(a) 원칙. - 내국세법 제330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f)항과 제(g)항을 삭제; 그리고
- (2) 제(e)항 뒤에 다음의 신설 조항을 삽입한다:

"(f) 고용자의 잘못에 대한 부담 면책의 금지. -

"(1) 원칙. - 어느 주(州)의 법령에서 그 주의 실업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것과 관련된 부담으로부터 어떤 고용자의 책임이 감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그 주의 법령은 제(a)(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주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

"(A) 그 고용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보상청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관의 요청에 시의 적절하게 응하지 못한 잘못을 함으로 인해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B) 그 고용자나 대리인이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응하지 못한 패턴을 입증하였다는 점.

"(2) 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주(州)의 권한.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A)호에 규정된 요청에 시의 적절하게 응하지 못하였다는 첫 번째 사례 이후의 경우와 같이, 위 호의 제(A)목 및 제(B)목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그 주의 실업기금에서 지급된 것과 관련한 부담에 대해 고용자가 감면을 받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그 주의 권한이 제한을 받

아서는 아니된다".

(b) 시행일. -

- (1) 원칙. - 제(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의한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시작되는 2년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 입증된 오(誤)지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2) 권한. - 주(州)는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증된 오(誤)지급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개정사항이 적용되도록 자기 주의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제563조. 재고용된 피고용자들에 관한 신규 고용 명부 보고.

(a) 신규 고용된 피고용자의 정의. - 사회보장법 제453A(a)(2)조(42 U.S.C. 653a(a)(2))에서 끝 부분에 다음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C) 신규 고용된 피고용자. - '신규 고용된 피고용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

"(i) 그 고용자에 의해 이전에 고용된 적이 없는 피고용자; 또는

"(ii) 그 고용자에 의해 이전에 고용은 되었지만, 그 이전의 고용 이후 최소한 연속하는 60일 이상 기간이 떨어져있는 피고용자".

(b) 시행일. -

- (1) 원칙. - 제(2)호를 전제로 하여,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6월 후에 시행된다.
- (2) 준수경과기간. - 보건인권부장관이 보기에, 사회보장법 제IV편 D장에 따른 어떤 주의 계획을 제(a)항에 의한 개정사항에 의해 부과된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자금의 세출에 관한 입법 제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사항의 시행일 후에 시작되는 그 주(州)의회의 첫 번째 정규회기가 폐회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분기의 초일 전에는 그 계획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된다. 그 주의 입법 회기가 2년인 경우에는, 그 회기 연도 각각은 그 주(州) 의회의 별도의 정규회기로 본다.

제II장-추가 대응구매

**제571조. 고성능 이미지 서비스(ADVANCED IMAGING SERVICES)에 대한 장비활
용율의 조정.**

(a) 원칙. - 사회보장법 제1848조(42 U.S.C. 1395w-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b)(4)(C)항에서 -

(A) "2011" 뒤에 있는 "and subsequent years"를 삭제; 그리고

(B) 끝 부분에서 기간 앞에 다음을 삽입한다. "; 2012년 이후의 연도에 대해 정
해진 수수료율표와 관련하여,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장관은 위와 같은 최종
규칙에 따라 달리 입증된 활용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2) 제(c)(2)(B)(v)(III)항에서, "'applicable to 2011" 뒤에 "그리고 2012년
이후의 연도에 적용되는 활용율"을 삽입한다.

(b) CMS 분석. - 공공법 111-148의 제3135(c)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본 조" 뒤에 "그리고 2011년의 무역 구조조정 지원 연장법 제571조"를 삽
입한다; 그리고

(2) "\$3,000,000,000"를 삭제하고 "\$4,000,000,000"를 삽입한다.

**제572조. 수입소득세 공제 실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유급 준비자에 대한 벌금의
인상.**

(a) 원칙. - 내국세법 제6695(g)조에서, "\$100"를 삭제하고 "\$500"를 삽입한다.

(b) 시행일. -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2011. 12. 31. 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573조. 조세행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교도소에

대한 요건.

- (a) 원칙. - 1986년의 내국세법 챗터 61의 서브챗터 B에서, 제6116조를 제6117조로 재지정하고, 제6115조 뒤에 다음과 같은 신설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제6116조. 조세행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교도소에 대한 요건.

"(a) 원칙. - 연방교정국 및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의 기관은 이전 2개 분기의 어느 부분 또는 8월 31일까지의 현재 연도 중에 교정 시스템 내에 수감되어있는 수형자들 전부에 대한 명단과 함께 제(b)항에 규정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정보. - 각 수형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1) 성(姓)과 이름,
- "(2) 생년월일,
- "(3) 현재 수감 기관 또는 출옥된 수형자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감 사항,
- "(4) 교도수에 배정된 수형자의 수,
- "(5) 수감 날짜,
- "(6) 출옥일 또는 예상 출옥일,
- "(7) 수형자 외부통근일,
- "(8) 납세자 고유번호 및 그 교도소가 그 번호를 검증하였는지 여부,
- "(9)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 그리고
- "(10) 장관이 요청하는 추가 정보.

"(c) 서식. - 장관은 제(b)항에 규정된 정보의 전자적 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 (b) 실무적인 개정. - 위 서브챗터의 목적에서, 제6116조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고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제6116조. 조세행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교도소에 대한 요건.

"제6117조. 교차 언급."

제VI편-대응구매

제601조. 상거래 처리 수수료.

- (a) 원칙. - 1985년의 통합옴니버스예산조정법의 제13031(a)(9)조(19 U.S.C. 58c(a)(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 제(A)목에서 "0.21"를 삭제하고 "0.329"를 삽입한다; 그리고
- (2) 제(B)(i)목에서, "0.21"를 삭제하고 "0.329"를 삽입한다.
- (b) 시행일. - 본 조 및 본 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본 법률의 입법일로부터 15일 후의 날 이후에 있는 상거래의 처리에 적용된다.

제602조. 통관 사용자 수수료의 연장.

- (a) 원칙. - 1985년의 통합옴니버스예산조정법의 제13031(j)(3)(A)조(19 U.S.C. 58c(j)(3)(A))에서, "2020. 1. 7."을 삭제하고 "2020. 12. 31."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 (b) 기타 수수료. - 1985년의 통합옴니버스예산조정법 제13031(j)(3)(B)(i)조(19 U.S.C. 58c(j)(3)(B)(i))에서 "2020. 1. 14."을 삭제하고 "2020. 11. 10."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미국]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행정조치성명

초안 2011년 6월 28일

이 행정조치성명(이하 “성명”이라 한다)은 2002년 무역촉진권한법(이하 “무역촉진권한법”이라 한다) 제2105(a)(1)(C)(ii)조에 따라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이행법안을 동반한다. 법안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 D.C.에서 미합중국 무역대표가 서명한 협정을 승인하고, 협정과 관련된 2011년 2월 10일자 미합중국과 한국 간의 서한교환(이하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이라 한다)의 혜택(benefits)을 보장하는 법률상 변경을 포함하여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법률상의 변경을 행한다.

이전의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성명과 같이, 이 성명은 미합중국의 국제적 의무 및 국내 법률과 관련하여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행정부의 관점에 관한 행정부의 권위 있는 표현(authoritative expression)에 해당한다. 행정부는 의회가 장래의 행정부가 이 성명에 규정된 해석과 책무를 준수하고 적용할 것으로 기대함을 이해한다. 또한, 이 성명이 협정에 관한 이행법안을 승인하는 시점에 의회가 이 성명을 비준할 것이므로, 이 성명에 포함된 협정의 해석은 특정한 권한을 수반한다.

이 성명은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안된 중대한 행정조치를 규정한다. 이 성명은 또한 이행법안의 관련 조항을 기술하여 이행법안이 현행 법률을 어떻게 변경할지 또는 현행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행법안의 관련 조항이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유 또는 협정의 이행에 적절한 이유를

기술한다.

또한, 이 성명은 무역촉진권한법 제2105(a)조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다른 성명을 통합한다. (1) 이행법안과 제안된 행정조치가 현행 법률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또는 현행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과 (2) 이행법안과 제안된 행정조치가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유 또는 협정의 이행에 적절한 이유를 기술한 성명이 그것이다. 협정은 미합중국이 사전에 한국과 협상한 협정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성명은 논의의 도입부에서 협정의 일반조항에 대한 분류(제1장, 제21장부터 제24장)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협정의 구성을 따른다.

협정의 각 장과 관련하여, 이 성명은 이행법안의 관련 조항을 기술하여 이행법안이 현행 법률을 어떻게 변경할지 또는 현행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행법안의 관련 조항이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유 또는 협정의 이행에 적절한 이유를 기술한다. 그 후 서명은 협정의 특정한 장(chapter)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안한 행정조치를 기술하여 제안된 조치가 현행 행정실무를 어떻게 변경할지 또는 추가 조치를 인정할지 여부를 설명하고, 해당 조치가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유 또는 협정의 이행에 적절한 이유를 기술한다.

성명은 또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을 갱신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비용을 간소화하고 삭감하는 법안의 조항을 기술한다.

이 성명은 대부분 미합중국 법률 또는 행정실무가 협정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하는 다수의 사례에 관하여 논의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미합중국 법규는 협정에 따라 맞게 된 의무를 이미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성명에서 인용하는 미합중국 법령의 특정 조문은 이 성명을 의회에 제출한 날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기초를 둔다.

제1장 (최초 규정 및 정의)

제21장 (투명성)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1. 이행법안

a. 의회의 비준

이행법안 제101(a)조는 무역촉진권한법 제2103(b)(3)조 및 제2105(a)(1)조에 따라 협정과 이 성명에 대하여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규정한다.

b. 발효

이 협정 제24.5조에 따라 미합중국과 한국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통지의 교환은 협정 발효의 필요조건이다. 이행법안 제101(b)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미합중국에서 발효하는 협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과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부여한다. 문서의 교환은 한국이 협정이 발효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한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대통령의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협정의 특정 조항은 협정이 발효된 후에 시행된다. 예를 들어, 협정 부록 I은 한국이 최대 2년까지 그 정보통신공급자의 외국인 간접소유에 대하여 적용하는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국민대우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 부속서 13-B에서 한국이 동의한 구체적인 약속은 협정이 발효된 이후 규정된 시간 동안 적용된다. 또한, 협정 부록 II는 협정이 발효된 후 지정된 시점에 시행하는 특정 법률서비스에 관한 한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c. 연방 법률에 대한 관계

법안 제102(a)조는 협정과 미합중국 법률 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행법안은 연방기관에 승인된 이행규정의 공포권한을 포함하여, 미합중국 법률이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게 하고,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의 변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협정과 달리 부합하지 아니하는 현행 연방법규의 개정,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현행 연방 법률의 개정, 특정한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연방 입법에 관한 그 목표를 달성한다.

제102(a)조는 협정의 조항이 법안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된 연방 법률의 조항을 포함하여 연방 법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조항은 국내법 하에서 시행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제102(a)조는 연방 법규의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협정에 부합하는 연방 법규의 이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조는 협정에 의하여 연방 법규의 우선사항으로 규정된다고 하기 보다는 연방 법규가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관점을 반영한다.

행정부는 이행법안에 모든 법률을 포함하고, 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합중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따르기 위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모든 행정조치를 이 성명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다. 행정조치는 법안 자체의 법규 변경으로 발생하는 규정과 근본적인 미합중국 법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률, 규정, 규칙 및 명령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규정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행법안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이외에 현행 연방 법률,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은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행정부가 예상하는 바이며, 이 성명은 미

합중국이 협정에 따라 맡게 되는 새로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미합중국 법률 및 협정을 이행하는 대통령의 계속적인 책임과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협정 하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와 같이, 협정을 이행하는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가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행정부는 의회에 입법을 청구하고, 법규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규 개정에 관한 기관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

d. 주법률에 대한 관계

협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주와 지역(local)의 법규뿐만 아니라 연방 수준의 법규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에 대하여 특히 정부조달, 노동, 환경,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금융서비스의 영역에서 다수의 예외 또는 제한사항이 있다.

분쟁해결패널이 주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법률을 자동적으로 “우선 적용” 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합중국은 협정에 따라 연방 및 비연방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주-연방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행정부가 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이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법안 제102(b)(1)조는 주법률 또는 그 적용과 협정 간에 충돌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합중국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 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은 협의를 통한 일관성을 달성하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 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업에 대한 법안 제102(b)(2)조의 인용은 맥카란·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 (15 U.S.C. 1012) 제2조에 따라야 한다. 동조는 연방 법규가 “보험사업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연방 법규가 보험사업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주법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협정의 특정 조항(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은 제13장의

“소급인정(grandfathering)” 조항이 현재의 비합치(예컨대, “non-conforming”) 조치를 면제하더라도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맥카란·퍼거슨법 제2조를 고려할 때, 이행법률은 주보험법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보험사업을 포함하는 협정의 조항을 위하여 보험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보험은 협정에 따른 다른 금융서비스와 같이 협정 및 이행법안에 따른 동일한 방식으로 달리 취급된다.

e. 개인소송

이행법안 제102(c)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또는 협정의 규정에 기초한 개인 당사자에 대한 사적소권 또는 사적권리구제를 배제한다. 개인 당사자는 협정과 의 합치(또는 불합치)를 이유로 하여 미합중국, 주, 또는 개인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또는 미합중국, 주 또는 개인 당사자에 대한 소송을 방어)할 수 없다. 동조는 또한 협정을 준수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정부가 재량권 또는 일반적인 “공익(public interest)” 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연방 또는 주의 소송을 요구, 배제 또는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사적소권을 배제한다.

주(州)와 관련하여, 제102(c)조는 개인소송은 주가 협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의회 및 행정부의 결정을 규정한다. 이러한 성질의 소송은 협정에 따른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관계의 수행을 방해하고, 의견충돌 또는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제102(c)조는 개인 당사자가 협정 제11장(투자)에 따라 미합중국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미합중국에 대한 해당 중재 결정의 집행을 청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동조는 또한 정부기관이 그 조치 또는 계획된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고려하거나 이에 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의 조치에 대한 변경은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f. 이행규정

법안 제103(a)조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신설 또는 개정된 규정을 공표하고 대통령이 협정의 조항을 시행하는 조치를 선언할 권한을 규정한다. 법안 제103(b)조는 가능한 경우, 법안에 요구되거나 승인된 모든 연방규정과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미합중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이행에 적합한 이 성명에서 제안한 모든 연방규정을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정 및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행정부는 가능한 경우에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타 규정을 개정 또는 공표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권한에 따른 규정의 공표절차는 해당 규정을 공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3(b)조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공표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그 지연된 사실, 지연사유 및 규정의 공표 예상일을 양원의 관련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는 1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g. 분쟁해결

법안 제105(a)조는 협정 제22장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의 제공을 관장하는 부서를 상무부 내에 설치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 조항에 따라 미합중국은 협정 제22.5조에 따른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부서는 5 U.S.C. 552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라 한다)과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아메리카, 바레인, 오만 및 페루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는 대우와 합치한다. 또한, 예를 들어 해당 부서는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선샤인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분쟁해결패널은 국제기구이므로 제22장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상기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안 제105(b)조는 제105(a)조에 따라 설치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전용을 승인한다.

h. 효력발생일

법안 제107(b)(1)조는 법안 Title I과 최초 3개 조항은 법안의 제정일에 시행된다고 규정한다. 제107(b)(2)조는 법안에 의한 특정 개정은 제정일에 시행하나, 협정이 발효된 때에 한하여 한국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107(a)조는 법안의 다른 조항과 법안에 의한 다른 법규의 개정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107(c)조는 법안의 조항(제107(c)조를 제외한다)과 법안에 의한 다른 법규의 개정은 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2. 행정조치

제1장, 제21장, 제23장 및 제24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행정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협정 제22.1.1조는 각 정부가 협정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이라 한다)가 이 목적을 위한 미합중국의 연락처로서 기능을 한다. 또한, 협정 제22.2조는 협정의 이행과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업무를 감독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국무역대표 또는 그 지정인은 공동위원회에서 미합중국을 대표한다.

협정은 미합중국과 한국이 협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패널로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는 독립된 전문가의 명단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USTR은 미하원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미상원재무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이하 “통상위원회(Trade Committees)”라 한다)와 협의하여 패널명단을 작성한다. USTR은 한국에 후보자 성명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고려하고 있는 전문가의 성명과 개개인에 대한 세부배경정보를 통상위원회에 제공한다.

협정 부속서 22-B는 한반도의 조건이 역외가공지역(OPZ)의 설정 및 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경제개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정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검토과정의 각 단계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협정의 목적 상 역외가공지역(OPZ)의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한다.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양 정부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추천서를 발행한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역외가공지역의 상품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은 자격이 부여되기 전에 추가 입법을 고려하여 제정하고, 대통령은 법률에 서명하여야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포함하여 미합중국 법률은 현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가 없는 한,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의 직접 및 간접적인 수입을 금지한다. 이 광범위한 금지는 또한 제3국에서 완성품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되는 북한의 상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OFAC는 해당 수입이 미합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미합중국 법률, 국가안전보장 및 해외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면허를 발급한다. 협정과 이 이행법안은 2001년 4월 18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3570호에 따라 부과되는 무역제제를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미합중국의 제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미합중국의 제제를 위반하는 자는 상당한 민사 및 형사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 이행법안

a. 선언권

법안 제201(a)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 및 관세할당(이하 “TRQs”라 한다)의

적용 또는 폐지를 통하여 협정 제2장에 따른 미합중국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이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 제201(a)조는 대통령이 협정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부속서 4-B, 부속서 22-A를 이행 또는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통령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한다.

- 관세를 변경하거나 유지할 권한
- 면세를 유지하거나 특혜대우를 할 권한
- 관세를 부과할 권한

또한, 법안 제201(d)조는 대통령에게 2011년 2월 10일자 서한교환에 규정하는 승객용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선언한 권한을 부여한다.

협정 제2.3조와 관련된 선언권은 대통령에게 협정 부속서 2-B의 미합중국 양허표에 따라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한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계속, 단계적 철폐 및 철폐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협정 제2.5조 및 제2.6조와 관련된 선언권은 대통령에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특정 범주에 대한 관세철폐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2.5조는 상업용 견본품, 전시를 목적으로 한 상품, 미합중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할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일시반입허가에 관한 것이다. 제2.6조는 (i)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미합중국으로 반환하거나 (ii) 미합중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발송한 상품의 수입에 관한 것이다.

협정 부속서 제22-A6과 관련된 선언권은 분쟁해결패널이 한국이 협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행위하거나 그 의무를 무효화 또는 손상시켰고, 이러한 행위가 미합중국 자동차의 판매, 판매제안,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최대 미합중국 정상교역국(국제적으로 최혜국으로 알려진) 우대 관세율까지 승객용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 제201(b)조는 법안 제104조의 협의 및 경유 조항을 조건으로, 대통령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한국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상호 유리한 양보(concession)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언을 통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 관세를 변경하거나 유지할 권한
- 협정 제2.3.3조에 따른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 부속서 2-B에 규정하는 관세 철폐단계를 변경할 권한
- 면세를 유지하거나 특혜대우를 할 권한
- 관세를 부과할 권한

법안 제104조는 대통령이 선언에 의한 관세변경을 실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협의 및 경유 단계를 규정한다. 이는 예컨대, 법안 제201(b)조에 따른 관세의 변경을 포함한다. 협의 및 경유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획된 조치에 관하여 (1974년 무역법 제135조에 따른) 적절한 민간분야 위원회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계획된 조치와 이를 실시하는 이유를 기술한 보고서를 통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안은 대통령이 해당 조치에 관하여 통상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전송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을 정한다. 60일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 대통령은 그 조치를 선언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제정된 때에 법안 제104조에 따라 협의 및 경유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제103(a)조에 따라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는 선언의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관세의 변경 외에, 이러한 조항은 협정 제6.14조에 따른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변경하는 제안을 시행할 권한 등 협의 및 경유를 조건으로 하는 법안에 규정된 다른 대통령선언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안 제201(c)조는 협정의 관세인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품에 대한 현재의 종량관세율 또는 복합관세율을 종가세(ad valorem)율로의 전환을 규정한다(상품에 대한 복합관세율은 예컨대, 킬로그램당 X달러와 상품 가격의 Y 퍼센트의 합계로 명시된 관세율이 될 것이다)

b. 세관이용수수료

법안 제203조는 1985년 통합일괄예산조정법(19 U.S.C. 58c(b)) 제13031(b)조를 개정함으로써 원산지상품에 대한 세관이용수수료에 관하여 협정 제2.10.4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약속을 이행한다. 해당 개정법은 협정 제4.2조, 부속서 4-A 또는 제6장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물품수속수수료의 즉각적인 폐지를 규정한다. 협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통관절차는 재무성의 일반기금(General Fund of the Treasury)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는 역외수입품의 가공에 대하여 부과된 수수료를 제공된 가공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써 미합중국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즉, 해당 역외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된 수수료는 원산지 수입품 가공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행정조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안 제201(a)(1)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협정 제2.5조(특정 상품의 일시반입) 및 제2.6조(특정 상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에 대한 무관세대우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3장 (농업)

제3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4장 (섬유 및 의류)

1. 이행법안

a.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

협정 제4.1조는 협정에 따라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의 우려가 있는 국내 섬유 및 의류 산업이 권리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는 또한 해당 권리구제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행정부는 협정이 한국으로부터의 섬유 또는 의류 수입에 있어서 피해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는 구제의 이용을 허용한다.

긴급수입제한 매커니즘은 협정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하여 한국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증가된 물량으로,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조건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미합중국의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사실상의 위협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1조는 미합중국이 협정에 규정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인하를 중지하거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상품에 대한 미합중국 정상교역국(최혜국) 우대 관세율 또는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미합중국 정상교역국(최혜국) 관세율 중 적은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안 Title III Subtitle C(제331조부터 제338조까지)는 협정의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을 이행한다.

법안 제331(a)조는 이해당사자가 대통령에 대하여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해당 요청의 적합성을 고려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요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안 제331(b)조에 따라, 대통령이 해당 요청의 적합성 고려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해당 요청을 고려할 것임을 진술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공고에는 해당 요청에 대한 요약과 의견 및 이의를 제출할 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비밀사업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요청의 전문을 볼 수 있다.

법안 제332조는 해당 요청을 고려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법안 제332(a)(1)조는 대통령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한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이 증가된 물량으로, 해당 상품의 국내시장에 대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조건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수입상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실제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조건 하에서 미합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한다. 법안 제 301(2)조는 “한국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이 법안 제202(b)조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분류하는 국제무역기구(이하 “WTO” 라 한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 나열된 품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통령의 결정은 협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상응한다. 법안 제332(a)(2)조는 협정 제4.1.2조에 부합하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의 실제적인 위협을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법안 제332(b)조는 대통령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의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미합중국의 산업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구제를 확인한다. 해당 구제는 (a)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의 중지, 또는 (b) (i) 구제가 허용된 시점에 시행 중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관한 정상교역국(최혜국) 관세율, 또는 (ii)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의 해당 물품에 관한 정상교역국(최혜국) 관세율 중 적은 비율로의 관세의 인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법안 제333조는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따른 최대 구제기간은 합산하여 4년이라고 규정한다. 최초 수입구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사실상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구제를 연장할 수 있다.

법안 제334조는 (i)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이미 구제가 허용된 경우, 또는 (ii) 해당 품목이 (a) 협정 제10장(법안의 Title III Subtitle A에 상응하는), 또는 (b) 1974년 무역법 Title II 제1장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따른 구제가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335조는 수입구제가 종료되는 날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인 섬유 또는 의

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 날에 시행 중인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336조는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따라 구제를 허용할 권한은 협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는 날로부터 10년 후에 만료된다고 규정한다.

협정 제4.1.6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하여 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미합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가 있거나 [긴급수입제한]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추가 관세금액과 동등한 권리(concession)의 형태로 상호 합의한 무역자유화보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미합중국과 한국이 무역자유화보상금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은 미합중국 상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보상금을 제공할 의무(및 보상금에 대한 협약 없이 관세를 인상할 권리)는 긴급수입제한 구제가 종료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1974년 무역법(19 U.S.C. 2133) 제123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1974년 무역법 title II 제1장에 따라 실시한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무역보상금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행법안 제337조는 해당 권한을 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 제한 조항에 따라 취한 조치로까지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법안 제338조는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요청의 검토과정에서 제출된 비밀사업정보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또한,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절차에 있어서 비밀사업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공개버전 또는 해당 정보의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규정의 집행

섬유 및 의류 상품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 협정은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해당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및 절차의 우회(circumvention)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우회방지규정을 포함한다. 협정 제4.3조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원산지 신청의 정확도를 결정하고,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섬유 또는 의류 상

품의 무역에 관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을 규정한다.

협정 제4.3.3조 및 제4.3.5조에 따라, 미합중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3조에 따른 검증의 목적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원산지신청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4.3.5조에 따른 검증의 목적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 관세법,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그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원산지신청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협정 제4.3.8조에 따라, 미합중국은 검증의 대상인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적용의 중지를 포함하여, 검증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제4.3.10조에 따라, 미합중국은 12개월 후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합중국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2가지 상황이 있다. 그 하나는 예컨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 측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미합중국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1)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2)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적용 관세법,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그 자가 생산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이다.

법안 제207조는 협정 제4.3조를 이행한다. 협정 제207(a)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장관이 요청한 검증이 실시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관에게 지시할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검증의 목적은 적용 관세법의 준수를 판단하거나 특정 상품이 원산지 상품 또는 “한국의 상품”이라는 신청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안 제207(b)에 따라, 해당 조치에는 검증의 대상인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관세청산 중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안 제207(c)조에 따라, 장관이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검증 요구,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적용 관세법,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검증요구를 한 후 12개월 이내에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취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법안 제207(d)조에 따라, 협정 제4.3.5조에 따른 검증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는 검증의 대상인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거절과 해당 상품의 미국 내 반입의 거절을 포함한다. 협정 제4.3.3조에 따른 검증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는 검증의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거절과 해당 상품의 미국 내 반입의 거절을 포함한다. 법안 제207(c)조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는 장관이 법안 제207(a)조에 따른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령하거나 대통령이 지시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법안 제207(e)조에 따라, 장관은 (i)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법률, 규정 또는 절차를 우회하고 있고, 또는 (ii)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자의 성명을 공표할 수 있다.

법안 제207(f)조는 협정 부속서 4-B 제9항을 이행한다. 제9항에 따라, 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은 협정 부속서 4-B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미국 내 수입업자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하고 서명한 적격성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7(f)조는 관세청장에게 이 요건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 제207(g)조는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당사자인 한국과 같은 국가의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관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 여부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미국 내에 소재한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기타 기업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적용 관세법,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생산을 검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c.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

협정 부속서 4-A에서 규정하는 섬유 및 의류 상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

라 미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실제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합중국 또는 한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취급한다. 협정 부속서 4-B는 미합중국이 품목별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함을 판단할 것을 규정한다. 미합중국이 “이해관계인” (잠재적 또는 실제 구매자 또는 공급자,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미국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요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미합중국은 협정 부속 4-B-1에서 규정하는 재료 목록에 해당 재료를 추가한다.

부속서 4-B는 또한 미합중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응하여 목록에서 재료를 삭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합중국은 해당 재료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는 결정을 공고한 후 6개월 후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안 제202(o) (3)조는 미합중국이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부속서 4-B-1에 규정한 미합중국의 목록에서 재료 목록을 변경할 것을 규정하는 협정 부속서 4-B의 해당 조항을 이행한다.

특히, 법안 제202(o) (3)조 제(C) (i)항은 이해관계인이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이 미국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함을 결정하고, 해당 재료가 협정 부속서 4-B-1에서 미합중국의 목록에 포함됨을 선언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02(o) (3)조 제(C) (ii)항은 대통령에 대하여 해당 재료가 미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202(o) (3)조 제(C) (iii)항은 대통령이 해당 재료가 미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협정 부속서 4-B-1에서 미합중국의 목록에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하는 선언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선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2(o) (3)조 제(C) (iv) (II)항은 대통령이

30 영업일 이내에 결정할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60 영업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02(o)(3)조 제(C)(v)항은 연방관보에 공표된 때에 선언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다.

제202(o)(3)조 제(D)항은 대통령이 해당 목록에 대한 재료추가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제202(o)(3)조 제(E)(i)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대통령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협정 부속서 4-B-1의 그 목록에 포함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2(o)(3)조 제(E)(ii)항은 대통령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재료가 미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이행하는 선언을 공표할 것을 규정한다. 제202(o)(3)조 제(E)(iii)항은 이러한 유형의 선언은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202(o)(3)조 제(F)항은 이해관계인이 협정 부속서 4-B-1에서 미합중국의 목록을 변경하는 요청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목록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절차를 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2. 행정조치

a.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CITA)는 법안 제331조에 따라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 조치 요청을 접수하고, 법안 제332(a)조에 따라 심각한 피해 또는 그의 실제적 위협을 판단하며, 법안 제332(b)조에 따라 구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해당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요청, 제332(a)조에 따른 그 결정 및 제332(b)조에 따른 구제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공표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법안에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b.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규정의 집행

법안 제207조는 장관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 여부 또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적용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증을 개시할 것을 한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검증이 실시되는 동안 법안 제207(b)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미합중국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법안 제207(a)조에 따른 권한을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대통령은 또한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07(d)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미합중국 공무원에게 지시할 권한을 부여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가 특혜관세대우를 거절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반입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미합중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한다.

법안 제207조는 협정 제4.3조를 이행하는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는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미합중국 법률이 배타적인 근거임을 규정한다.

c.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

대통령은 협정 부속서 4-B-1에서 미합중국의 목록에 규정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의 목록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정할 수 있는 법안 제202(o)(3)에 따른 권한을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위원회에 대하여 (i) 협정 부속서 4-B-1에서 미합중국의 목록에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추가하거나 (ii) 해당 목록에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을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공포한다. 이러한 절차는 요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요청을 공고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요청에 관한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해당 요청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법안 제202(o)(3)조에 따라 결정한다. 해당 요소는 통상적인 요청의 대상인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의 물리적 및 기술적 명세와 미국 내의 제조업자가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를 포함한다. 범부처간 섬유협정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을 공고한다.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1. 이행법안

제5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행정조치

협정 제5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접근을 다룬다. 이 장에 따라, 미합중국 연방 보건의료프로그램이 급여를 위한 신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은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미합중국 규정 또는 실무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1. 이행법안

a. 일반규정

이행법안 제202조는 협정 제6장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을 성문화한다. 이 규정은 이 법안과 협정에서 규정하는 관세대우를 목적으로만 적용한다. 이 법안을

위한 원산지 상품은 다른 미합중국 법규를 위하여 반드시 한국의 상품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규정에 따라, 한국의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상품이 미합중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갖게 되는 기본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이 “전적으로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용어 “전적으로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은 법안 제 202(n) (5)에서 규정하고, 예컨대,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채취된 광물,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상품의 생산에서 파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한다.

용어 “전적으로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은 “회수상품”을 포함한다. 이는 “재생상품”을 형성하는 다른 회수상품과 다른 재료를 결합하기 위한 양질의 근로조건에서 기인하는 부품을 말한다. 용어 “재생상품”은 (i)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회수상품을 구성하고 (ii) 유사한 수명을 갖고 신상품과 유사한 품질보증을 향유하는 HTS 제84장, 제85장, 제87장, 제90장 또는 제9402조에 해당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안 제202(n) (20)조에서 별도로 정의한다.

둘째,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은 상품이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생산되고, 그 자체가 원산지 상품이 아닌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재료가 협정 부속서 4-A 또는 부속서 6-A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기타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형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해당 추가 요건은 예컨대, 부정기적인 관세품목분류의 변경과 함께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관련된 가공 또는 가동의 실시 또는 지역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요건의 충족을 포함한다.

셋째,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은 상품 자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는 재료만으로 전

적으로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 영토에서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 상품이라고 규정한다.

협정 제6장의 주석은 원산지 상품이 자동적으로 양국의 영토 내로의 “반입을 허용”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다. 미합중국으로 수출된 모든 상품의 경우와 같이, “원산지 상품”은 미합중국의 영토로의 반입이 허용되려면 수입금지, 무역제제, 면허요건 등을 포함한 적용 미합중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행법안 제202조의 나머지 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협정의 특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특별규정을 정한다. 예를 들어, 법안 제202(c)조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최소한 지정된 비율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협정 부속서 6-A의 조항을 이행한다. 이는 특정 자동차상품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역내 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하는 선택적 방법을 규정한다. 법안 제202(f)조는 상품이 관세품목분류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역외산재료의 미소수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법안 제202조의 다른 조항은 재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가 다양한 기타 물품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법안 제202(1)조는 특정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서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하고 제3국을 통하여 상품을 선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국에 있는 동안, 상품은 필요한 경우에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생산될 수 없다. 상품이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되거나 제3국을 통하여 단순히 선적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상품은 제3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를 받는다.

제202(1)조는 현대의 상업에 있어서 상품이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선적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간 항구(interim port)에서 선적이 통합될 수 있다. 동시에,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가 제3국의 생산자보다는 한국과 미합중국의 생산자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산지 상품은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될 수 없다. 상품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더 나은 상품의 추적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b. 선언

법안 제202(o) (1)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는 법안의 관세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추가 종속규정 뿐만 아니라, 협정 부속서 4-A 및 부속서 6-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선언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법안 제202(o) (2)조는 법안 제104조의 협의 및 경유 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에게 선언에 의하여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위 제2장 항목 1.a 참조).

협정은 여러 조항에서 한국과 미합중국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협정 제6.14조는 양국 정부가 협정 제6장과 그 부속서의 개정 또는 변경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정이 발효된 후에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협정 제4.2.3조는 일방 당사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영토에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 공급의 이용가능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원산지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 제202(o) (2)조는 선언에 의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HTS 제50장부터 제63장에 나열되고, 협정 부속서 4-A에서 확인된 것을 말한다)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변경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인쇄상 오류, 오타자 또는 기타 실질적이지 아니한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언에 의하여 해당 원산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안 제202(o) (3)조는 또한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또는 원단에 한정된 원산지 규정의 변경을 선언할 권한을 부여한다.

c. 잘못된 정보의 공개 및 특혜대우의 거절

협정 제6.19.3조는 당사자는 수입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과실, 중과

실 또는 사기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즉시 자발적으로 해당 신청을 보정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무효인 신청을 한 수입업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협정 제6.18.6조는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하여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도록 허위 또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증명 또는 기타 진술을 제공하는 유형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하는 이후의 증명 또는 기타 진술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그 중지는 수입 당사국이 그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법안 제204(a)조는 1930년 관세법(19 U.S.C. 1592(c)) 제592(c)조를 개정함으로써 미합중국에 관한 협정 제6.19.3조를 이행한다. 법안 제204(b)조는 1930년 관세법(19 U.S.C. 1514) 제514조를 개정함으로써 미합중국에 관한 협정 제6.18.6조를 이행한다.

d.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협정 제6.19.5조는 수입업자는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부한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이 사실상 수입시점에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안 제205조는 수입업자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1930년 관세법 제520(d)조((19 U.S.C. 1520(d)))를 개정함으로써 협정 제6.19.5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이행한다.

e. 수출업자 및 생산자 증명

협정 제6.15조는 수입업자가 (i)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ii)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출업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특별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협정은 과세가격이 \$1,000 이하인 상품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수출업자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출업자의 인지에 기초하거나 생산자가 발행한 별도의 증명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협정 제6.20조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다.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그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증명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서를 발행한 모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법안 제204(a)조는 1930년 관세법 제592조(19 U.S.C. 1592)를 개정함으로써 협정 제6.20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이행한다. 법안 제204(a)조에 따라 추가된 관세법 제592조의 신설 제(j)항은 사기, 중과실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의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업자 및 생산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한다. 이 벌칙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위에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f. 기록유지요건

협정 제6.17조는 각 정부가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록유지요건을 규정한다. 수입업자에 관한 협정 제6.17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는 1930년 관세법 제508조(19 U.S.C. 1508)의 기록유지조항을 포함하여,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족된다.

제6.17조는 또한 각 정부가 협정에 따라 수출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업자 및 생산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록유지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206조는 관세기록유지 법률(1930년 관세법 제508조)을 개정함으로써 미합중국에 관한 협정 제6.17조를 이행한다.

법안 제206조에 의하여 추가된 1930년 관세법 제508조 제(i)항은 용어 “KFTA 원산지 증명서” 및 “기록 및 보충문서”를 정의한다. 동항은 K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미합중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기록 및 보충문서를 작성, 보관하고, 장관이 공포한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 및 조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생산자는 이 기록 및 보충문서를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30년 관세법 제508조 신설 제(j)항은 또한 이 기록유지요건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규정한다.

2. 행정조치

협정 제6장의 원산지 규정은 주로 제3국이 아니라 한국과 미합중국에서 상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의 이익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한 상품이 (i) 전적으로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생산되거나 획득되거나 (ii) 한국, 미합중국 또는 양국의 영토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a. 특혜대우의 신청

법안 제208조는 장관에 대하여 원산지 규정 및 세관이용수수료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관세관련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장관은 이 권한을 특혜대우신청에 적용되는 협정의 조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공포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협정 제6.15조에 따라, 수입업자는 (i)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ii)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업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는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협정 6.15.2조에 규정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협정 6.19.1조에 따라, 수입 당사자는 그 관세 공무원이 해당 신청이 법률상 또

는 사실상 무효임을 서면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 제6장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승낙하여야 한다.

b. 검증

협정 제6.18조에 따라, 관세 공무원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한 상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신청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협정 제4.3조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신청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규정한다(상기 제3장 항목 1. c 참조). 미합중국 공무원은 현행 법률에 따른 권한에 의거하여 협정 제6.18조 및 제4.3조의 검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1930년 관세법 제509조((19 U.S.C. 1509)는 관세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을 조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미합중국의 관세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을 규정한다.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촉진)

1. 이행법안

협정 제7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행정조치

a. 문의처

협정 제7.1.2조는 각 정부에 대하여 관세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문의할 수 있는 문의처를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미합중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이 미합중국의 문의처의 역할을 담당한다. 협정 제7.1.2조에 따라, 미합중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은 이해관계인이 관세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인터넷 “www.cbp.gov” 에 정보를 게시한다.

b. 사전심사결정

협정 제7.10조에 따른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재무부 규정(원산지 상품으로서의 분류, 평가, 원산지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은 사전심사결정 획득에 관한 관세규정 제177부의 기존 규정과 대부분이 유사하다. 예를 들면, 사전심사결정은 그 사전심사결정에서 진술된 사실관계와 상황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가정을 신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해당 기업이 기존의 사전심사결정에 의존할 경우에 변경의 효력발생일을 연기하고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조항을 둔다.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신청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표한다.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8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 또는 행정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1. 이행법안

제9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행정조치

협정 제9.8조는 정부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이하 “TBT” 라 한다)를 설치한다. TBT 문제 또는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담당하는 USTR 공무원은 위원회를 위하여 미합중국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협정 부속서 9-B는 미합중국이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이행 및 집행에 시의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인 무역장벽에 관한 조기경고시스템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한다. TBT 문제 또는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담당하는 USTR 공무원은 이 작업반을 위하여 미합중국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작업반은 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한국의 상대기관, 그리고 기타 관련 정부규제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이들과 협의한다. 작업반은 또한 민간분야 전문가와 양 정부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장 (무역구제)

1. 이행법안

법안 Title III Subtitle A는 협정 제10장에 규정하는 미합중국 법률의 긴급수입제한 조항을 이행한다. 법안 Title III Subtitle B는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제D조에 규정하는 자동차에 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을 이행한다. 법안 Title III Subtitle D는 협정 제10장에 규정하는 다자 긴급수입제한을 이행한다(위 제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행법안 Title III Subtitle C는 협정의 섬유 또는 의류 긴급수입제한 조항을 이행한다).

a. 긴급수입제한조치

법안 Title III Subtitle A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ITC가 조사 및 긍정판정(또는 대통령이 긍정판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판정)을 한 이후에,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또는 관세철폐의 결과로서, 해당 상품이 증가된 물량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의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 하에서 미합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때에는 “한국 상품”에 대하여 정상교역국(최혜국) 관세율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 조에서 규정하는 표준과 절차는 1974년 무역법 제201조부터 제204조까지(19 U.S.C. 2251 - 2254)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법안 제301(1)조는 용어 “한국상품”은 법안 제202(b)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안 301(2)조는 용어 “한국자동차상품”은 법안 제202(b)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되는 HTS 제8703조 또는 제 870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안 제311조는 ITC에 대한 신청서의 제출과 Subtitle A에 따라 시작된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실시하는 ITC에 관하여 규정한다. 법안 제311(a)(1)조는 “산업의 대표”인 독립체가 ITC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74년 무역법 제202(a)(a)조에 따라, 용어 “독립체(entity)”는 무역협회, 기업, 인증 또는 승인된 조합, 또는 근로자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안 제311(a)(2)조는 신청 독립체에 대하여, 마치 신청서가 1974년 무역법 제 202(a)조에 따라 제출된 것과 같이 잠정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안 제311(a)(3)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증가에 관한 “중대한 상황”의 청구를 신청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1974년 무역법 제202(d)(2)조에 따른 잠정적 구제의 청구에 필요한 요소로서, 법안 제311(c)조를 통하여 Subtile A 긴급수입제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안 제311(b)조는 Subtitle A 긴급수입제한절차에 규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ITC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을 규정한다.

법안 제311(c)조는 1974년 무역법의 다수 조항을 인용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그 법 제202(b)(1)(B)조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한 정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된 제202(c)조에 나열된 요소, 제202(d)조의 잠정적 구제 조항, 제202(b)(3)조의 청문회 요건 및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대한 보호명령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조사에 대하여 비밀사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202(i)조의 규정이 그것이다.

법안 제311(d)조는 이미 국내 산업에 대한 Subtitle A에 따른 구제의 기초가 된 한국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조사를 면제한다.

법안 제312(a)조는 법안 제311(b)조에 따른 조사 이후의 ITC 판정에 대한 기한을 설정한다. ITC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20일(또는 중대한 상황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피해판정을 하여야 한다.

법안 제312(b)조는 1930년 관세법 제330(d)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이는 ITC 위원이 피해 또는 구제의 문제에 관하여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안 제312(c)조에 따라, ITC가 긍정판정을 하거나 대통령이 긍정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안 제312(a)조에 따라 ITC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 또는 방지하고, 수입경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국내 산업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구제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ITC가 권고할 수 있는 구제는 법안 제313(c)조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현행 법률의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항에 따른 절차와 유사하게, 법안 제312(c)조는 법안 제312(a)조에 따른 긍정판정에 합의한 ITC의 구성원에 한하여 제312(c)조에 따른 구제의 권고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312(d)조에 따라, ITC는 피해판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ITC의 보고서는 (i) 법안 제312(a)조에 따른 ITC의 판정과 그 판정을 뒷받침하는 사유, (ii) 제312(a)조에 따른 판정이 긍정적이거나 대통령이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구제에 관한 결정 및 권고와 각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 (iii) ITC 위원의 반대 또는 개별 견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안 제312(e)조는 ITC에 대하여 그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표하고, 연방관보에 보고서의 요약본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 제313(a)조는 법안 제313(b)조를 적용하여, 긍정판정 또는 대통령이 긍정판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판정을 포함한 ITC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지시한다. 대통령은 ITC가 확인한 피해를 구제 또는 방

지하고, 수입경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국내 산업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입구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3(b)조에 따라, 대통령은 해당 구제가 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구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법안 제313(c) (1)조는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구제의 성질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추가 인하 중지, 또는
- 현재의 정상교역국(최혜국) 관세율 또는 협정이 발효되기 전 날에 부과되는 최혜국 실행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

제313(c) (1)조는 또한 계절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한다.

법안 제313(c) (2)조에 따라, 대통령이 제공하는 구제의 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에는 해당 구제는 그 적용 과정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여야 한다.

법안 제313(d)조는 Subtitle A 긴급수입제한에 따른 수입구제 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수입구제의 최초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심각한 피해를 구제 또는 방지하고, 수입경쟁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구제가 필요하고, 산업이 수입경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수입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판정은 효력이 동일한 ITC의 긍정판정(또는 대통령이 긍정판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판정)을 따라야 한다.

법안 제313(e)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한 이후 한국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을 명시한다. 구제가 종료됨에 따라, 관세율은 해당 구제 조항이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관세율이 된다.

법안 제313(f)조는 (i) 미합중국 법률의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항(1974년 무역법 Title II 제1장)에 따른 수입구제의 대상이거나 (ii) Subtitle C의 섬유 및 의류 긴급수입제한에 따른 수입구제의 대상인 상품을 구제에서 면제한다.

법안 제314조는 Subtitle A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정이 철폐되어야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할 때까지 해당 상품에 관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관세철폐기간 또는 10년을 넘는 특정 제품에 관한 철폐기간이 경과한 후에 Subtitle A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안 제315조는 미합중국이 Subtitle A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하여 구제를 부과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하여 협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무역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15조는 대통령이 다자 긴급수입제한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1974년 무역법 제123조의 목적상, 법안 제313조에서 규정하는 구제는 미합중국 법률의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항(1974년 무역법 제201조부터 제204조까지)에 따라 취한 조치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316조는 비밀사업정보의 공개에 관한 1930년 관세법 제332(g)조의 절차가 Subtitle A 긴급수입제한조사에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4년 무역법 제202(a)조를 개정한다.

행정부는 과거의 긴급수입제한 절차에서 ITC에 기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장래의 절차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아니한다. 행정부가 해당 절차에서 ITC에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해당 정보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제12958호에 따라 그 공개가 보호된다.

b. 자동차 긴급수입제한 조치

법안 제321조는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의 제D조에 규정하는 자동차에 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을 이행한다. 동조는 한국 자동차 상품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1) 이미 Subtitle A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구제의 근거가 된 상품은 조사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2) 구제는 그 적용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 점진적인 자유화의 대상이 아니며, (3) 제313(d)(2)(A)조에서 규정하는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수입구제의 유효기간을 최대 2년(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4) 관련 관세가 제201(d)조 또는 협정에 따라 철폐되는 날 이후 10년 동안에는 언제든지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c.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치

법안 제341조는 협정 제10.5조의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항을 이행한다. 동조는 대통령에 대하여 1974년 무역법 제201조부터 제204조까지에 따라 다자 수입구제를 허가함에 있어서 특정 조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원산지 상품의 수입을 구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법안 제341(a)조는 ITC가 긍정판정을 하거나 대통령이 긍정판정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1974년 무역법 제202(b)조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사에 있어서, ITC가 한국으로부터 제202(b)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안 제341조(b)에 따라, ITC가 법안 제341(a)조에 따른 부정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ITC의 결정이 포함하는 모든 수입품을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행정조치

협정 제10.8조는 범정부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무역구제 사안 또는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USTR 공무원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담당한다.

협정 제10.7.3조에 따라, 상무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AD) 또는 상계관세(CVD)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한국 정부에 통지한다. 상계관세신청의 경우에, 상무부는 19 U.S.C. 1673a(b)(3)에 따라 한국의 대표자에게 해당 신청에 관하여 상무부의 공무원과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덤핑 신청의 경우, 상무부는 19 U.S.C. 1673a(b)(3)에 따라 한국의 대표자에 대하여 회의 또는 기타 유사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10.7.4조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가격약속을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부와 한국 수출업자가 제안한 가격약속에 관하여 상무부와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약속을 요청할 기회는 미합중국 법규에 따라 제공되고, 모든 조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약속에 관한 모든 협정은 미합중국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정 제10.7조는 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미합중국 반덤핑 또는 상계관계 법규에 대한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1장 (투자)

1. 이행법안

법안 제106조는 미합중국에 대하여 협정 제11.16.1(a)(i)(C)조 또는 제11.16.1(b)(i)(C)조에 따라 한국 투자자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 조항은 특정 유형의 정부계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것이며, 법안 제106조는 미합중국이 해당 분쟁의 중재에 동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협정 제11.16조가 규정하는 기타 청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중재에 참여함에 있어서 미합중국에 대하여 법률상 승인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특정한 계약상 청구의 중재를 허용하는 조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미합중국의 양자 간 투자협정과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중앙아메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오만 및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왔다.

2. 행정조치

제11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행정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2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3장 (금융서비스)

제13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4장 (통신)

제14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5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6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7장 (정부 조달)

1. 이행법안

협정 제17장은 협정 부속서 17-A에 열거한 특정 정부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을 정한다. 이 장의 규정은 이들 기관이 협정 부속서 제17-A에 규정하는 기준가를 넘는 가액의 것을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협정 제17장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통상적으로 외국 상품과 서비스,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를 미합중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 보다 비우호적으로 대우하는 연방 법규, 절차 및 관습의 적용을 포기하여야 한다. 1979년 무역협정법 제301(a)조(19 U.S.C. 2511(a))는 대통령에 대하여 동 법률 제301(b)조에서 지정하는 외국의 “적격 상품”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습의 적용을 포기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17장의 조달관련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한국은 무역협정법 제301(b)조에 따라 지정될 자격이 있으며 그와 같이 지정된다.

무역협정법 제301(a)조의 용어 “적격상품”은 WTO정부조달협정(GPA)의 당사자인 국가 및 기관과 NAFTA 및 최근의 기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동법 제308(4)(A)조에서 정의한다. 한국은 GPA의 당사자이며, GPA에 포함되는 미합중국 정부기관은 현재 한국 상품 및 서비스를 달러 기준가(dollar threshold)를 지정하는 상기 조달에 관한 “적격상품”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당 기준가를 낮추고, 해당 기준가는 GPA의 적용을 받는 모든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조달과 미합중국 사회보장처의 조달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안 제401조는 무역협정법 제308(4)(A)조에 규정하는 “적격상품”의 정의를 개정한다. 개정에 따라 동법 제308(4)(A)조는 한국의 경우에 “적격상품”은 미합중국에 의한 조달을 위하여 협정에 포함되는 한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규정

하게 된다. 이 개정된 정의는 무역협정법 제301(a)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병행하여 협정에 포함되는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저기준가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한국으로부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2. 행정조치

위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협정 부속서 17-A는 협정 제17장의 적용을 받는 미합중국 정부기관은 특정 달리 기준가를 초과하는 가액의 것을 구매하는 때에는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장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USTR은 협정상 한국과 관련된 기준가를 연방조달규제위원회(이하 “FAR위원회”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그 후 FAR위원회는 연방조달정책청법에 따른 적용절차에 따라 해당 기준가를 연방조달규정에 통합한다.

협정 제17.7조는 조달 기관은 천연자원 및 환경의 보존을 증진하거나, 공급자에 대하여 상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영역에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최저임금, 근로시간, 직업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용인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의 입안, 채택 또는 적용이 금지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조달 기관은 법률이 수출가공지구에 그 소재하는 외국 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의 생산자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품이 생산되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과 협정 제17장의 다른 조항은 데이비스-베이컨법과 관련 법률(40 U.S.C. 3141 - 48과 29 C.F.R. 5.1)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8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9장 (노동)

1. 이행법안

제19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행정조치

협정 제19.5.1조는 각 당사자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를 설치한다. 협정 제19.5.3조는 각 정부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국 및 대중과의 연락처로서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의 국제노동문제 담당국(ILAB)은 동조의 목적을 위하여 미합중국의 연락처로서 역할을 하고, 동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USTR과 협의한다.

제20장 (환경)

1. 이행법안

제20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행정조치

협정 제20.6.1조는 각 당사자의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치한다. 협정 제20.9.1조는 일방 당사국 정부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상대방 정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각 정부는 해당 요청을 접수하는 연락처를 지정할 것을 규정한다. USTR의 환경자원부가 이 목적을 위한 미합중국의 연락처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다.

TITLE V - 무역조정지원

협정은 미합중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순이익을 규정한다. 협정은 또한 특정 근로자와 기업의 일시적인 대체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유형을 창출한다.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니즈를 다루기 위하여, 1974년 무역법 Title II는 무역조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특히,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은 무역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재고용되는 것을 돕는 중요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이 1974년 이후 계속 시행되는 동안, 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TGAAA)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권고에 따른 보수 및 개선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중요한 보수 및 개선을 제공하였다. 적격성은 서비스 분야 근로자와 미합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보상을 포함하기 위하여 확장되었다. 이용 가능한 혜택과 서비스는 보다 장기간의 교육, 고용 및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선되었고, 책임감을 강화한 행정상 변경을 포함하였으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증가시켰다. 2011년 2월 13일에, 이러한 개정 사항이 실효되고, 프로그램은 현재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2012년 2월 12일에 기한이 만료된다. 이 법안의 Title V는 무역조정지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의 변경을 통하여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포함된 대부분의 중요한 보수 및 개선을 회복한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개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프로그램은 다시 1년의 기간 동안 이전의 법률로 복귀한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을 확장하는 조항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의회가 미합중국의 주요 무역협정으로 보는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미합중국의 근로자, 기업 및 농민이 협정과 기타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때, 미합중국의 사업체와 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무역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무역조정지원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무역촉진권한 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에 따라 제정된 이전의 무역협정 이행법안은 유사한 무역관련 조항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NAFTA 이행법안은 무역조정지원 수당을 확장하고 대부분을 미합중국 관세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였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갱신과 마찬가지로, 이들 조항은 관련 무역협정을 이행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당 협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은 처리하였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갱신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의 선례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오히려, 해당 조항은 2009년에 의회가 개선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복귀시킨다.

1.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a.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조항의 적용

Title V Subtitle A는 무역조정지원을 다룬다. Subtitle A 제I부는 1974년 무역법 Title II에서 승인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조항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법안 제511(a)조는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의한 프로그램 개정을 종료하는 동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한다. 제511(b)조는 제정일 현재, 그 개정과 이 법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에 적용하는 해당 조항을 복귀시킨다.

b.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정

Subtitle A 제II부는 여러 가지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다.

c. 그룹적격요건

법안 제521조는 그룹적격요건에 관한 것이다. 법안은 서비스 부문 근로자의 보장범위와 생산과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강화된 보장범위를 포함하여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규정된 거의 모든 그룹 적격성에 대한 확장을 유지한다. 또한, 법안은 국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한 불공정한 외국의 경쟁으로 손해를 입은 산업에서 그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의 적격성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킨다.

제522조에 의한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작업반은 프로그램에 적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들 근로자는 2009년에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으로 추가되었으나, 현재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 수당에 대한 자격이 없다.

d. 교육요건의 포기

법안 제522조는 무역재조정급여(TRA)에 관한 특정 교육요건의 포기에 관한 것이다. 무역재조정급여는 실업보험(UI)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득지원금이다. 기본 무역재조정급여는 개인이 무역조정지원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업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최대 26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권리포기가 인정되는 사유는 6가지가 있다. 그 중 3가지 즉 (1)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에 참가할 수 없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또는 (3) 즉시 교육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조에 포함된다. 제522(a)조에 의하여 삭제되는 권리포기 사유는 (1) 근로자가 복귀명령을 통보받은 경우, (2) 근로자가 시장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및 (3) 근로자가 은퇴 후 2년 이내인 경우이다. 이 범주의 근로자는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더 이상 기본 무역재조정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제522(b)조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그 시간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장관이 무역재조정급여의 신청 또는 교육등록에 관한 특정 시간제한의 포기 절차와 기준을 정할 것을 규정한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라, 주실업보험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권리포기를 규정한 경우와 이전의 법률이 해당 권리포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에 따른 권리포기를 할 수 있다.

e. 무역재조정급여에 대한 제한

법안 제523조는 무역재조정급여의 제한에 관한 것이다. 기본 무역재조정급여 후, 실직한 날로부터 26주 이내에 교육등록(또는 늦은 경우에는,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을 한 근로자는 추가 무역재조정급여도 이용할 수 있고, 추가 무역재조정급여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

지원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78주까지 추가 무역재조정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523조에 따라, 최초 65주는 현행 법률에 따라 계속 지급되고, 최종 13주는 근로자가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1) 근로자가 학위 또는 산업인정자격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하여 여러 주가 필요하고, (2) 근로자가 각 해당 주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3) 근로자가 근로자 교육의 일환으로 설정된 성과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고, 근로자가 교육수료를 위해 계속할 것이 예상되고, 근로자가 해당 최종 13주의 적격기간 동안 교육을 수료할 것이다. 실업보험, 기본 무역재조정급여 및 추가 무역재조정급여가 지급되는 주의 합계는 승인된 장기교육의 수료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대 130주까지 소득지원금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보충교육 또는 필수교육에 등록한 근로자가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최대 26주의 무역재조정급여 기간(총 156주 가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f. 교육, 고용, 사례관리서비스, 구직수당 및 전근수당, 행정의 재정지원

법안 제524조는 교육, 고용, 사례관리서비스, 구직수당 및 전근수당, 관련 행정의 재정지원에 관한 것이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라, 교육을 위하여 각 회계연도에 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급금의 법률상 한도는 \$575,000,000이었으나, 해당 조항이 실효된 때의 한도는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이전 수준인 \$220,000,000로 삭감되었다. 제524(a)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회계연도에 대한 연간 한도를 \$575,000,000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은 \$147,750,000을 한도로 회복하고, 해당 한도는 교육 이외에, 고용, 사례관리서비스, 구직 및 전근수당, 관련 행정과 관련하여 주에 제공되는 재정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제524(b)조에 따라, 주에 제공되는 금액 중 10퍼센트 이하는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소 5퍼센트는 고용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존하고 근로자가 장래에 관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의 통합은 근

로자가 필요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용한 프로그램 자금을 주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은 또한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라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정부에 대한 자금의 분배를 규정한다.

제524(c)조는 모든 주에 기금이 제공된 회계연도 이후에 2차 또는 3차 회계연도 동안 해당 주의 의무가 아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에 할당된 자금을 장관이 재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관은 이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주에 분배하는 절차를 정한다. 재할당권은 해당 자금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524(d)조 및 제524(e)조에 따라, 주정부는 개정된 프로그램 하에서 구직 및 전근 수당으로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환급의 최대 수준은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이전 수준, 즉 구직비용의 90%로 최대 \$1,250(무역 및 세계화조정지원법은 100퍼센트, \$1,500), 전근비용의 90%로 최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법정한도에 추가 일시금 최대 \$1,250을 더한 금액(무역 및 세계화조정지원법은 100퍼센트, \$1,500)이다.

g. 재고용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법안 제525(a)조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만 더 낮은 급여, 더 낮은 수준의 직장을 구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제공하는 임금보험프로그램, 재고용 무역조정지원은 보다 유연한 적격요건과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라 제공된 추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함께 계속된다. 재고용 무역조정지원의 적격성에 관한 신규 고용의 최대 소득은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이전 수준인 \$50,000(\$55,000 대신에)과 2년 간 임금보험 보조금의 최대금액 \$10,000(\$12,000 대신에)로 설정된다. 제525(b)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한다.

h. 프로그램 책임성

법안 제526조는 프로그램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은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새로운 성과 및 데이터수집 요건을 추가하였다.

제526조는 일부를 개정 및 추가하여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포함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526(a)조는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 상의 프로그램에 관한 “핵심지표”를 개정하며, 이는 (1) 등록취업율, (2) 고용유지율, (3) 평균소득율을 포함한다. 이러한 “핵심지표”는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나, “공약수(Common Measures)”로 알려진 인력투자법 및 기타 인력개발프로그램에 사용된 등가지표 보다 1분기 늦게 측정된다. 또한,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1년 이내에 인정된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자격달성”의 “핵심지표”가 추가된다. 이러한 지표는 2011년 10월 1일까지 시행한다.

제526(b)조는 프로그램 활동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수집 및 보고요건을 추가한다. 이 요건은 수령한 무역재조정급여 수당에 관한 추가 데이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수령 및 시간제 교육, 교육기관에 관한 신규 데이터 변동,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 소득비교 데이터, 연령별 성과지표의 신규 돌파 및 교육수준과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관한 주정부의 경비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신설요건은 2012년 10월 1일까지 시행한다.

i. 근로자를 위한 무역재조정급여 승인의 연장

법안 제527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근로자를 위한 무역재조정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용의 승인을 연장한다.

2. 기업, 공동체 및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Subtitle A 제III부는 기타 조정지원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법안 제531조는 기업프로그램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개정사항을 규정한다. 제531(a)조는 성과 보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하에서 요구되는 현행 연차 보고서를 개정한다. 상무부장관은 그 연차보고서에 제출된 신청의 수와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당을 수령한 기업의 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연차보고서는 전국적 및 지역적으로 프로그램 하에서 수령한 수당의 평균기간, 계속 운영 중인 기업의 수, 종료 이후 2년

의 기간 동안 매년 프로그램의 종료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분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상무부 장관의 연차보고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공급자가 지출한 총금액과 각 공급자가 지출한 금액을 다룬다.

제531(b)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1974년 무역법 title II 제3장에 따른 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용을 승인한다. 이 법안은 회계연도 2012년과 2013년 각각에 대하여 승인수준을 \$16,000,000(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따르면 \$50,000,000)로, 회계연도 2014년 1분기에 대하여 \$4,000,000을 설정한다.

법안 제532조는 무역법 title II 제4장에 따른 공동체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제532(a)조는 상무부의 권한에 속하는 공동체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과 노동부의 권한에 속하는 무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위한 산업 또는 부문 파트너십 인정프로그램을 규정한다.

제532(b)조는 공동체 대학 및 경력교육 인정프로그램 하에서 요구되는 연차 보고서에 성과 및 기타 데이터를 추가한다.

법안 제533조는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제533(a)조는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요구되는 연차 보고서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농림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의 수, 인증 및 거절된 신청의 수, 신청의 평균처리시간, 각 의원선거구에 제출된 신청의 수 및 승인된 농산품 생산자의 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당을 수령한 생산자의 수, 승인 및 거절된 초기사업계획 및 장기사업계획의 수, 생산자가 받은 초기 및 집중 기술지원의 유형, 장기사업계획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포기한 생산자의 수와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유, 및 프로그램에 따라 수령한 수당의 평균기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533(b)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전용을 승인한다. 법안은 회계연도 2012년과 2013년 각각에 대하여 승인 수준을 \$90,000,000로, 회계연도 2014년 1분기에 대하여 \$22,500,000을 설정한다.

3. 일반조항

a. 무역조정지원 조항의 적용가능성

법안 제541(a)조는 프로그램 하에서 제출된 특정 신청과 관련된 무역법 title II 제2장의 적용 조항을 다룬다. 제541(a)(1)조는 2011년 2월 13일에 또는 그 후, 이행법안이 제정된 날 또는 그 전에 제출된 신청에 대한 적용조항을 정한다. 법안이 제정된 날 현재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신청은 그 날에 시행하는 인증에 대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및 거절된 신청은 법안이 제정된 날에 시행하는 그룹적격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고 및 인증하여야 한다.

법안 제정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하에서 수당을 받고 있고(교육등록요건의 포기 또는 교육의 승인을 포함한다) 상기 신청에 따라 인증된 근로자와 2011년 2월 13일 이후(해당 일을 포함)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제정일 전에 인증된 근로자에게는 2013년 2월 13일에 시행된 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당과 제정일에 시행하는 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당 간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해당일 현재 수당을 받지 아니하는 상기 인증에 따라 포함되는 근로자는 제정일에 시행하는 조항에 따라 수당을 수령하여야 한다. 상기 선택 이전에 수령한 모든 수당은 각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수당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41(a)(2)조는 2009년 5월 18일 이후(해당 일을 포함)와 2011년 2월 12일 이전(해당 일을 포함)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인증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011년 2월 12일 현재 시행된 1974년 무역법 title II 제2장의 조항(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에 의하여 개정된 조항)에 따라 수당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수령할 자격이 있다. 2009년 5월 18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인증된 근로자는 2009년 5월 17일에 시행된 조항에 따라 수당 및 서비스를 계속하여 신청하고 수령할 자격이 있다.

제541(a)(3)조는 제정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의 경우, 수당 및 서비스 신

청에 대한 인증은 해당 인증이 인정되기 전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해당 일을 포함)가 아니라, 2010년 2월 13일 이후(해당 일을 포함)에 분리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규정한다.

제541(b)조는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특별규정의 유사한 결정 및 재고를 규정한다. 2011년 2월 13일과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아니한 법안제정일 사이에 제출된 신청은 법안제정일에 시행하는 요건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신청이 그 기간 동안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법안이 제정된 때에 시행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신청을 재고 및 인증하여야 한다.

제541(b)(2)조는 법안제정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은 2011년 2월 13일에 시작하여 법안이 제정되기 전날에 종료하는 기간 동안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종료조항

법안 제542조는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종료조항을 개정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날 또는 그 날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유사하게,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날 또는 그 날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승인된 기술지원 또는 보조금은 자금이 가용하고 수령자가 계속하여 적격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날 또는 그 날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승인된 기술지원 또는 금융지원은 자금이 가용하고 수혜자가 계속하여 적격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c. 일몰조항

법안 제543(a)조는 일몰조항을 규정한다. 제543(a)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13일의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 대체무역조정지원, 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및 농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한다. 이전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은 상기 법안 제522(a)조 및 제52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포기 및 무역재조정급여의 제한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다. 이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 프로그램의 승인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543(a)조는 또한 이전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종료 및 단계적 종료 조항을 규정한다.

제543(b)조는 2011년 2월 13일에 시행된 이전 법률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법안 제정일에 시행 중인 법률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 따라 인증된 근로자, 기업 및 농산품 생산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적용한다.

4. 건강보험 개선

2002년 무역법은 무역조정지원 수혜자와 PBGC 등록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였다. 최초 건강보험세액공제(HCTC)는 유자격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의 65%를 지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자격자와 가족은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사전세액공제를 매월 또는 연방 소득세신고에 대한 공제로서 매년 받을 수 있다.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은 HCTC를 80%로 인상하고 유자격 가족 구성원의 적격성을 연장하고, 무역조정지원 수혜자 및 PBGC 등록자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타 사항을 변경하였다. 이 조항은 2011년 2월 13일에 만료되었다.

Title V Subtitle B는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의 건강보험 개선조항을 개정한다.

a. 건강보험세액공제

법안 제551(a)조는 내국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보험세액공제가 2014년 1월 1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제551(b)조는 적격보장월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의 세금납부자와 유자격 가족 구성원의 보장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시행 중인 65퍼센트 수준에서 72.5퍼센트로 인상한다. 인상된 세액공제율은 2011년 2월 12일 이후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보장월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는 또한 유자격 건강보험의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세액공제를 선지급하는 내국세법 제7527조를 준수하여 개정한다.

이 조는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30일 이후 효력발생일까지 통지요건을 준수하도록 내국세법 제7527(d)(2)조를 개정한다. 동조는 또한 적격 납세자가 자격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아니한 건강보험세액공제의 선지급에 관한 내국세법 제7527(e)조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 대하여 제공한 건강보험세액공제의 소급지급에 관한 효력발생일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시작하는 보장월이 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재무부 장관은 2011년 2월 12일 이후와 법안의 제정일 이후 30일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보장월의 공제금액을 위하여 특별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그 대신, 납세자는 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보장월에 관하여 인상된 공제금액을 소득세 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다).

법안의 이 조는 또한 내국세법 제35조에 따라 건강보험세액공제의 적격성을 정하는 특별규정을 승인된 교육프로그램 하에서 규정된 “교육중지”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 적격 무역조정지원 수혜자에 대하여 확대한다. 이 확대는 2011년 2월 12일 이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보장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51(b)조는 2011년 2월 12일 이후에 시작하는 보장월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유자격 건강보험으로서 권한 있는 대표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립된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복지제도에 따른 보장의 대우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는 특정 사건 이후의 건강보험세액공제를 위한 가족 구성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내국세법 제35(g)(9)조를 개정하고, 2011년 2월 12일 이후에 시작하는 달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달까지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인력투자법 제173(f)(8)조를 준수하여 그 개정을 한다.

b. 보험기간이 63일의 중지가 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사전인증기간 규정

법안 제552조는 유자격자의 보험기간이 63일의 중지가 있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험의 무역조정지원 관련 손실과 무역조정지원 증명 후 7일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무역조정지원 사전인증기간을 2014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연도에 대한 계획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내국세법,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공중보건서비스법의 동일 조항을 개정한다. 제522조는 해당 계획에서 2011년 2월 13일에 시작하여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기간에 관한 혜택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재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안의 제정일로부터 30일 후가 되는 날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규정 또는 기타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c. 무역조정지원의 자격을 갖춘 개인 및 PBGC 연금 수혜자에 관한 통합예산총괄조정법 혜택의 연장

법안 제553조는 2014년 1월 1일까지 COBRA 보험료 지원을 받는 유자격 가족구성원과 유자격 무역조정지원의 유자격자 및 PBGC 연금 수혜자의 지속된 공제적격성을 연장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내국세법 및 공중보건서비스법의 동일 조항을 개정한다. COBRA 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격성의 연장은 법안의 제정일 이후 30일 또는 그 이후에 종료하는 보험기간에 적용한다.

5. 상계

Title V Subtitle C 제I부는 실업보험프로그램의 완전성을 개선하는 상계를 규정한다.

a. 사기에 따른 초과지급에 대한 의무적 벌칙 평가

법안 제561조는 주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기로 인하여 결정된 수당 신청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의 15% 이상을 벌칙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SSA)을 개정한다. 주는 납부된 벌칙 금액을 즉시 주실업신탁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에 따라, 제도를 사취한 - 종종 부정하게 수령한 수당을 상환하여야 하는 -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주가 별도로 벌칙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b. 사용자 과실을 사유로 한 미부과 금지

법안 제562조는 (1) 사용자가 주 실업보상(UC) 기관의 요청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과지급을 초래한 경우, (2) 사용자가 해당 요청에 대하여 기한 내에 또는 적절히 응하지 아니하는 유형을 정한 경우에, 주 정부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수당의 초과지급으로 인한 수당 부과금(benefit charges)을 경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연방실업세법을 개정한다. 이 조에 규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실업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과금이 경감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c. 신규채용자등록부에 대한 재고용 근로자의 보고

법안 제563조는 주의 자녀양육비부과 승인의 조건으로서, 모든 사용자가 주 신규채용자등록부에 재고용 사실을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 title IV-D를 개정한다. 그 개정에 따라, 주 등록부는 이미 신규고용의 경우에 보고된 현재 정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정보를 전국신규채용자등록부(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로 전송한다. 주 실업보상(UC)기관은 주 신규고용등록부가 일자리로 복구한 이후에 실업보상 수당을 청구하는 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부당하게 실업보상 수당을 수령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에도, 사용자가 이전에 자신을 위하여 근무하였던 자의 재고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6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자의 재고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Title V Subtitle C 제II부는 추가 상계를 규정한다.

d. 첨단영상서비스에 관한 장비활용율의 조정

제571조는 첨단영상서비스에 관한 장비활용율의 조정 형태로 추가 상계를 규정한다. 2012년에 대하여 설정된 의료보험료표의 경우, 이 조항은 practice가 장관이 2009년 11월 25일자 연방관보에 공표한 최종 규정에서 고가의 영상진단장비에 지정하는 방법론의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활용률 추정치를 75%에서 80%로 인상하고, 2013년과 그 이후에는 80%에서 90%로 인상한다(42 CFO 410 EU ap). 이 조항은 예산중립의 결정에서 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된 경비를 제외한다.

e.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법절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신고서 작성자에 대한 벌칙의 인상

제572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법절차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신고서 작성자에 대한 벌칙을 \$100에서 \$500으로 인상한다.

f.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합중국에 소재한 교도소의 요건

제573조는 미합중국에 소재한 모든 교도소가 매년 수형자가 제출한 허위의 신고서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모든 수형자의 성명 및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IRP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TITLE VI - 상계

물품수속수수료율

법안 제601조는 종가세 .329 퍼센트의 형식적 등록에 대하여 관세 및 국경보호청이 부과한 현행 물품수속수수료율의 인상을 규정하고, 종가세 .21 퍼센트에서 .329 퍼센

트로 물품수속수수료를 범위의 상한을 인상한다. 이 개정은 법안 제203조를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에 따라 상품이용수수료에 부과한 제한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율의 변경은 1995년에 물품수속수수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입법상의 변경을 한 이후, 증가된 무역량과 추가 운영계획에 따라 관세 및 국경보호청이 부담한 증가된 비용을 다룬다. 이 조는 이행법안이 제정된 날 이후 15일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세관이용수수료 연장

법안 제602조는 1985년 통합예산총괄조정법에서 승인한 물품수속수수료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승객 및 운송수속수수료를 2021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 제13031조를 개정한다.